



**발행일** 2015년 1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신영호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04 **세대공감**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인터뷰
- 08 **로스쿨 탐방**  
금태환 원장과 함께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2 **행복 로스쿨**  
전남대학교 로스쿨 김용석 학생
- 14 **파워인터뷰**  
해운대구 최연소 구의원 한병철 변호사
- 18 **리걸클리닉 스케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교육센터
- 22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 school\_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영현  
about the world\_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반석
- 26 **로스쿨 오피니언**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현장
- 35 **통계로 보는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
- 44 **언론 속 로스쿨**  
한국경제 좌담회 현장
- 46 **SPECIAL REPORT**  
기획기사 4탄: 영국 로스쿨
- 52 **특별기고**
- 54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60 **툐아보기 / 문화가 산책 / 로스쿨 핫이슈 / 협의회 소식**

이상민 위원장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다양한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우직한 소신파', '열정의 참일꾼', '서민의 대변인'. 수식어만 봐도 그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인지 가늠할 수 있다. "모두 유성구민들이 나에게 과분한 신뢰를 보내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다. 바쁜 정치 일정 속에서도, 법을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봤다.

##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산다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어”



### 이상민 위원장

■ 학력

대전중 · 충남고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사법고시(34회)  
변호사  
대덕대 · 우송대 · 충남대 겸임교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법사위 간사 겸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회장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제 17 · 18 · 19대 국회의원(대전유성)  
현 국회법제사법위원장

**Q. 위원장님께서서는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17대 총선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많이 부족한 저를 신임해주신 유성구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기대와 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잘 해야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이라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저를 뽑아주신 유성 구민들께서 실망하실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선택해주신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스스로도 계속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Q. 2006년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시작으로, 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안착을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A. 17대 국회 후반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았을 때, 사법개혁을 하는 것은 목은 숙제였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정부의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형사소송법, 참여재판 등 다양한 안이 있었지만 그 중 근간을 이룬 것이 로스쿨 제도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 법안은 아니었지만,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핵심 법안이었습니다.

**Q. 기존 법조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서는 사법고시 출신이신데, 로스쿨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A. 저 역시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종래의 사법시험은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소위 과거시험식 패러다임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법개혁 당시 과거시험식 선발제도를 통해서도 오늘날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법률가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덕목과 유능함을 겸비하도록 양성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했고, 그 제도가 바로 로스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존 법조계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로스쿨



인생과 세상의 무거움은 직접 세상에 뛰어 들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에, 넓은 들판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정해진 길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길로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99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 수가 많아지니까, ‘울타리 속에서 특권을 누리던 법조인들이 황량한 벌판으로 나가게 된다’는 의식이 깔려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로스쿨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Q. 로스쿨 제도의 도입 전부터 로스쿨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애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하는 대신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 ‘투트랙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사법개혁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로스쿨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웃나라 일본에 제대로 안착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일본 로스쿨을 방문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원인은 법조계 진출 통로가 두 갈래 즉,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공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 체제와 로스쿨 제도가 상반관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은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정해진대로 사법시험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Q.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현 대판 음서제, 부의 대물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나오는 이야기가 로스쿨은 귀족들, 부유층 자제들만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를 개별 로스쿨에게만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장학금 제도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관부서는 교육부인데, 선발시험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처 모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스쿨이 국가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을 문제도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A.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신분상승을 하고 떼돈을 번다는 심리, 조급증과 벼락부자 심리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연마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도대체 왜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떼돈을 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니 수임료 5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등,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7급 공무원은 안 된다는 등,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행정쪽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7급이든 9급이든 아래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책 속에는 없는 메커니즘이나 사람들의 고민, 사회문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급에 관계없이 도청, 군청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중소기업에도 들어가는 등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여야 합의 아래 2,000명의 입학정원을 정했고, 3년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대부분 합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제도는 입학 정**

**원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로스쿨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특별한 결함이 없는 예비법조인 자격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합격률이 낮아진다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과연 어디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찾아서, 결함을 치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담보돼야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에 대한 논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설익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로스쿨의 교수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도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과정의 연수기간은 짧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중함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도 조교부터 업무를 배우듯, 변호사 역시 그런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아 시정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찾아내서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위원장님께서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시고,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특별계층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발하는 제도 이외에,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양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출신 등에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개별 로스쿨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하버드 로스쿨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만큼 동문들의 기부를 통한 재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 로스쿨은 이제 겨우 6년을 지나왔을 뿐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누구도 로스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Q. 한국 법조계를 이끌어 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2년 연수과정을 마치면 법조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허구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도 마찬가지죠.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했다고, 곧바로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갔더니 로스쿨을 졸업하고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문·고문 변호사가 아닌 경영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는 법률 담당 총경영자인 것이지요. 이들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아래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미생>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면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된다. 세상에 내던져지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게 된다.” 인생과 세상의 무거움은 직접 세상에 뛰어 들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에, 넓은 들판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정해진 길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길로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생>의 장그래처럼 말이죠. 로스쿨 재학생들은 어쩌면 무엇을 해도 관계없을 만큼 소중한 인생의 황금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지만,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산다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배로서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을 잘 키운다.’는 건방진 표현보다는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싶다.’는 표현으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



영남대학교는 설립 이래 20만 명이 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영남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당시 기대가 높았던 까닭도 이 때문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민족의 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다.

# YU 영남대학교 로스쿨은 '지방 로스쿨'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품 로스쿨'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랑을 해 달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에서 제일가는 명문 사립대학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다수의 훌륭한 법조인이 배출됐다. 특히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에서 탑 클래스였다. 높은 취업률도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교내 환경과, 도서관, 기숙사, 모의법정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각계각층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영남대학교의 동문만 2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타 법학전문대학원보다 우수한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육 측면'이다. 정교수 33명 중 15명이 법조경력 평균 20년이 넘는 실무교수이다. 이론교수님들도 각 과목에서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시는 훌륭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교육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장학금 제도'이다. 현재 학생들에게 등록금 수입의 48.9%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9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즉,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으니,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남다른 동기'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교수-학생간의 멘토-멘티 제도도 있지만, 동기-동기끼리의 멘토-멘티 제도가 활성화 돼있다. 학생들끼리 단순 경쟁 상대가 아닌, 서로를 도와주려는 동기가 남다르고 끈끈한 것이 타 법전문과 차별되는 우수 요인이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법률 실력이 출중하면서, 동시에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어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졸업 후에 바로 법조인이 되려면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 아무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률 지식을 갖췄더라도, 윤리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다. 당장 코앞에 닥친 변호사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법조인이라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법조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봉사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키워주려고 한다. 그래서 법조윤리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저명한 법조인들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윤리의식을 겸비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어떤 학생들이 입학하길 바라나. 인재상과 연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성실하고 열정을 가진 학생'이다. 여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사실 성실성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교생활, 학교 성적을 1차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1차적 기준과 더불어 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 즉, 어영부영 떠밀려서 온 학생보다는 무언가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학생, 로스쿨에 와서 꿈을 꾸기 보다는 꿈을 갖고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했으면 한다. 물론 이렇게 꿈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도, 막상 입학하면 시험공부에 시달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영남대학교 교수진들도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지닌 꿈이 실현되도록 말이다.

## 공익·인권법을 특성화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성화 과목은 수차례의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 당시 교수들이 생각하기에 변호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익·인권 의식'이었다. 공익·인권 의식은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밑바탕이라는 것에 모두들 동의했다. 특성



화 교육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익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였지만, 막상 운용을 해보니 여러 분야에서 공익인권 관련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법, 노동법 등도 단순히 법일반이라기 보다는 <환경법과 인권>, <노동법과 인권>, <농업법과 인권> 등 각 분야에서 공익, 인권 요소를 찾아내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였다. 그래서 다양한 공익·인권 기관, 시민단체, 해외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공익·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도 1학년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공익·인권의식을 체득하다보니 시민단체, 공사, 공기업 등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타 법학전문대학원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동호회, 학회)이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하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멘토-멘티 제도 외에도 축구·야구·씨름 등의 각종 동호회, 다양한 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법률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토지문제, 상속 문제, 조상묘지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구조 활동이 고될 만도 할 텐데, 신청자가 많아 매학기 선착순으로 운영될 만큼 봉사활동의 희망자가 많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구성을 보면, 순수한 서울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서울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와

공부를 한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서울에 연고를 갖고 있으면 서울에 가겠지만, 지방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지방에 남는다. 특히 최근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도시(상주, 영천, 포항 등)에 개업하거나, 취업하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사/비법학사 수업을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

기존에 법대를 졸업해서 이미 법을 공부한 학생과 기초가 아예 없는 학생은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1학년 동안만 법학사 출신과 비법학사 출신을 구분해서 교육하고 있다. 비법학사 반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익히고, 법에 흥미도 붙이게 하면서 점차 교육의 밀도를 높인다. 입학 후 1년만 분리해서 교육하면, 2학년에 올라가서 통합을 했을 때 법학사 출신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법학사 맞춤형 교육이 시도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비법학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신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법학사/비법학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덜 갖고 있지만, 일본의 경험은 다르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합격률은 법학사의 비율이 비법학사보다 두 배인 상황이다.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동시에 교육하고 동일한 기간에 평가하는 것은 비법학사에게는 너무 불리하다. 미국식 로스쿨의 원래 취지는 전혀 법학공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아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시켜 그 성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비법학사에게 1년간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마음 같아서는 재학생 모두에게 100% 장학금을 주고 싶는데(現 90% 지급),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로스쿨 출범 6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전무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에 장학금을 지원해줬던 곳에서도 지원을 꺼리는 현실이다. 결국은 교비로 지원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최소한 로스쿨의 특별전

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다보니,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길러줘야 하는 궁극적 목표와 병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봉사활동이나 학회 활동 등을 권장하고 싶지만, 시험공부 때문에 무작정 권장하기도 녹록치 않다. 변호사 시험 공부와 꿈을 위한 전문지식이라는 양자를 병존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최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즉 시험범위를 줄이고 합격률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애로점은 지방 대학 나름의 고충이다.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단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지방대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서도 밝혔듯이 높은 통계수치(취업률, 합격률 등)가 이를 반증한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이 공직 진출에서 더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런데도 그러한 선입견을 깨트리기가 힘들다.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균형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늘어난 응시자 수를 고려해서 지방에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향후 발전 방향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방을 뛰어넘는 명품 대학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합격률, 취업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명문 사립대학의 맥을 이어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뭔가 다르다'라는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의 DNA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창**



드라마 속 여주인공 곁에는 언제나 착한남자가 있다. 극 초반 착한남자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여주인공은 나쁜남자에게 더 끌린다. 하지만 결국엔(보통은 나쁜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후) 자신에게는 착한남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고로 '착한남자=매력없음'이라는 공식은 옛말이라는 말씀. 여기에 한 남자가 있다. 마치 드라마 속 착한남자처럼 선한 인상과 심성을 가진 김용석 학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환하게 웃는 그를 만나봤다.

editor. 박소희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전남대학교 로스쿨 김용석 학생 인터뷰



### 법학과를 졸업해서, 로스쿨에 진학한 것을 보면 법 공부에 꽤나 매력적이었나 봐요?

매형이 검사라서 인천지검을 한번 데리고 가 준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서는 배가 나와서 아저씨같았던 매형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웃음) 철없던 시절이라 막연히 '멋있다'는 생각에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 그러면 검사를 꿈꾸고 있는 건가요?

어느덧 나이도 서른 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공부했다고, 세무를 공부했다고 '그쪽으로 진출해야지' 라고 미리 못 박아두는 건 위험한 행동 같아요. 한 가지에 너무 매몰돼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어요. 생각은 항상 바뀌는 것이고, 상황에 맞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 학생회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학교에 애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학생회장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수님들, 선배님들을 비롯해 다른 로스쿨 학생회장들도 자주 만났거든요. 학교 안에만 있었으면 자칫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소통하니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변명이긴 하지만, 학생회장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학점은 썩 좋게 나오진 않더라고요.(웃음)

### 로스쿨에 오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항상이요!! 공부를 할 때, 훌륭한 선·후배·동기,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또 인터뷰를 하는 이 순간도 제가 로스쿨에 왔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합격통지서라는 게 대학입학 이후 처음으로 받았던 것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뽑아주신 학교교수님 외 여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반면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하나요?

어느 공부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스트레스 관리는 꼭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면에 불안감이나 짜증이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운동을 해요.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축구나 농구, 달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환기시킨 후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강의실-도서관-집'이라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름의 변화를 줘서 활기찬 생활을 하는 거죠.

###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법조인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 선과 악으로 나누고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법의 잣대만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단지 법의 적용대상으로써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의뢰인을 소위 돈벌이로 보는 거죠. 방송에서 봤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 닿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고든 피고든 왜 항상 불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직 우리 법조계의 현실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도 전에,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귀를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법조 직역을 통해 뜻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싶어요. 서른 살이 된 지금까지 학생이다 보니 주변 분들에게 받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법조인이 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을 테니,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아, 물론 지금도 밥은 사드릴 수 있어요. 하하.

### 로스쿨 입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 줄 조언이 있을까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공동체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다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지만 좀 더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법조인이란 나름 만물박사가 돼야하고 특히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시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면 면접은 따로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웃음) **창**

## 김용석이 말하는 너트 노하우!

### 다독은 필수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언어이해와 논술 영역 접근이 보다 수월해진다.

###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다짜고짜 1번부터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푼다는 생각으로 풀어나가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시간 분배에 실패하게 된다. 요령껏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자.

### 시험 당일 컨디션이 당락 좌우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시험이 다가오면 긴장해서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의 번호 14000개. 하루 평균 1~2건의 무료법률상담 진행. 끝같은 주말에도 지인들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쁘다는 한병철 구의원. 첫 만남에서 그가 건넨 명함은 두 장이었다. 한 장에는 법무법인 변호사라는 직업과, 다른 한 장에는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적혀있었다. 독특한 이력으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화제가 된 인물 한병철 구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업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해야”

해운대구 최연소 구의원 **한병철 변호사**(부산대 로스쿨 출신)

### 변호사와 구의원을 위한 디딤돌, 로스쿨

인터넷 검색창에 ‘한병철’ 이름 세 글자를 검색하면 ‘전국 최초 변호사 출신 구의원’, ‘해운대구 최연소 의원’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담은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에게 붙는 수많은 수식어만큼, 그는 요즘 초선 구의원과 법무법인 ‘좋은’의 새내기 변호사로 활동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후배들을 위해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선뜻 시간을 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만난 약속 장소에서,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그는 부산에서 출생해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했다. 군복무 당시 그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 하루 2시간씩 꼬박꼬박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를 했고, 복무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었던 2009년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에 합격했다.

“군대에서는 스터디도 할 수 없었고, 인터넷이 없는 최전방이라 정보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각 과목 당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책을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봤고, 차분하게 준비한 결과 부산대 로스쿨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그는 장교생활 중 길러진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전국 6,000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대표가 되어, 권익을 대변하는 일을 한 그에게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묻자, “당시 변호사시험이 서울에서만 치러졌고, 지방소재 로스쿨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 법조인력과장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여러 판사·검사님들을 찾아뵙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어요. 다행히도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은 대전까지 확대됐습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법학공부와 회장단의 일을 병행하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이는 그가 사회 및 정치문제에 보다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3학년 재학 중에는,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이 갔다. “저는 그때까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부터 배워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해운대 구민이 주인이 되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뜻을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 있어요.

99

#### 청년 변호사, 정치에 출사표 던지다.

구의원 출마 당시 에피소드가 듣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마치 입학원서 내듯이 출마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답한다. “보통 구의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준비를 하세요. 학력이나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동네주민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지역기반을 닦는거죠.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하고, 정당의 공천 경쟁을 뚫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려면 친분이 있는 지역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 없이 대학교 입학 원서 내듯이 출마자로 지원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웃음)”

갓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에게 선거자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했고, 변변한 선거사무실 하나 없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의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진심을 전하고자 새벽부터 밤까지 두 발로 뛰어다니던 한병철 의원. 그가 당시 돌린 명함만 6만장이라고 하니,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당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운동 당시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 이도 어리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하나며 욕박을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 모두 지역구의 주민들이셨고, 쓴소리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통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선거 날이 밝았지만, 개표 후 자정이 넘어가도록 그의 순위는 4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막판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소망하던 해운대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신선함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변호사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였기 때문에 신문과 TV 등 각종 매체에서도 이색 후보로 소개 받곤 했거든요. 또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나 싶어요. 구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선출되기 어렵거든요.”

#### ‘진심’으로 하는 정치, 진심은 통하잖아요!

6.4 지방선거 이후 구의원과 변호사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그는 현재 누구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정치신인의 초심과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먼저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물었다.

“구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주위에서 축하인사도 많이 받았고, 지역주민들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첫 등원 이후에는 제일 먼저 해운대 구의회 의장단 선출을 했고, 2014년 해운대구 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어요. 구의회는 구청장을 견제하면서 조례제정 및 폐(입법기능), 1년에 4061억에 달하는(2012년 기준)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의결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감시견제기능), 청원의 심사 처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또 기획관 광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해운대구 빛축제를 기획하고, 무료법률상담실설치조례, SNS강화조례, 아파트관리조례 등의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과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은 매일매일 1-2건씩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께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문자,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이혼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한참 상담을 하고 나면, ‘근데 한의원은 언제 결혼했어?’라고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아직 미혼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웃음) 이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공사대금 문제, 생활 분쟁, 폭행, 사기 등 일상적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계속하고 있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한 의원.

전문적 지식과 넘치는 패기. 그럼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투와 눈빛. 한병철 의원은 말한다. “오전에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법인으로 가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보니, 정신없고 바쁘죠. 하지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를 보면 수천 개의 초밥을 만들 때, 단 하나라도 잘못 만든 초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대목이 있어요. 초밥 요리사에게는 수천 개의 초밥 중 하나일 뿐이지만, 초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초밥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구의원 업무나 변호사 업무에 임하려고 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진정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죠.”

####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법조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있고, 변호사의 수도 예년에 비해 늘어났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 의원처럼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묻자, 그는 답한다.

“단순히 변호사 자격에 안주해서 기존 법조인의 틀에만 갇혀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학지식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그에 더해서 법조인으로서의 포부와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잘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결국엔 재미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원, 검찰, 대형로펌,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 있어요.”

“구의원이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저처럼 기초의회에 진출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성향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조금 더 유리할거예요. 선거는 얼마나 많은 표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일찍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다면 호감을 살 수 있는데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지역주민분들이 스펙이나 학력, 경력만으로는 투표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률전문가로서 기초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다양한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결산 승인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가능하니까요. 로스쿨 후배들, 청년 변호사들이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지역 구민들을 위하는, 나아가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진심은 통한다고 말하는 한병철 의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자, 수줍게 대답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창**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화여자대학교는 명실공히 여성 교육의 산실이다. 지난 130여 년 간 이화여자대학교를 통해 수많은 여성 리더가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여성 교육의 씨앗'이라는 학교의 수식어처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역시 '봉사의 씨앗'을 품고 있다. 봉사의 씨앗이 초록빛 새싹으로 움트는 현장,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을 다녀왔다. editor. 박소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교육센터  
(Ewha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 진정한 의미의 사회봉사활동이 시작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



### Q.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법학교육센터(이하 '리걸클리닉')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제 법률상담과 소송사건에 참여하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법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고, 의뢰인을 접하는 올바른 태도도 습득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 Q.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은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는가?

**한민:** 크게 리걸클리닉 교과활동, 사회봉사

법무활동(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지원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리걸클리닉 교과활동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우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2013년의 경우 리걸클리닉 I, II(민사, 공익소송, 사회적기업법무, 난민, 취약계층여성지원, 이주여성지원, 국제인권), 젠더 법학 클리닉, 의료소송 클리닉 I, II가 개설되었고, 2014년에는 이주민 인권, 민생경제 지원 리걸클리닉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둘째 사회봉사 법무활동은 무료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임상법학회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월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셋째 법률구조 지원 활동은 법률상담 과정 등에서 접하는 사건들 중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지원 결정을 하고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외부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리걸클리닉 활동 결과 2013년에는 법률상담이 332건, 소송참여가 41건 행해졌다.

### Q.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만의 장점은?

**한민:** 교과활동을 통한 리걸클리닉의 장점은 개설 교과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교과목 내에서도 법률상담, 법률자문, 소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실무수습이 가능하다. 또 교과목 자체가 사회봉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의 설립 목적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의 다른 장점으로는 다양한 리걸클리닉 교과목을 우수한 겸임교수님들이 열성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점,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 리걸클리닉 교과목에 졸업생 선배 변호사들이 튜터로 참여하여 재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점도 들 수 있다.

### Q. 튜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권태상:** 졸업생들 중에는 공익법무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리걸클리닉 교과목의 튜터를 선정하고 있다.

튜터는 리걸클리닉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을 도와서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업마다 튜터의 역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튜터는 주로 수강생들의 서면 작성을 도와주거나, 수강생들이 작성한 서면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튜터 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 친하게 되고, 졸업 후에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왔다. 앞으로도 튜터 제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Q.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과목은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이다. 리걸클리닉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는 '젠더법'과 '생명의료법'이다. 먼저 특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리걸클리닉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젠더법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여성지원, 이주여성지원 리걸클리닉, 젠더법학 클리닉 등이 있다. 상당수의 수업이 특성화랑 연관되어 있고, 법률구조 지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Q. 현재 진행 중인 법률상담 사례를 소개해달라.

**권태상 :** 서대문구청 무료 법률상담 사례 중에서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이는 내담자 A가 동거남 B의 폭행, 도박 등의 문제로 B와 헤어졌는데, 이후 B가 A의 통장을 훔쳐가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그 통장을 사용한 사건이다. 그 제3자가 A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률구조 지원을 통하여 본교 출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Q. 리걸클리닉 운영에 문제점, 난관이 있다면?**

**한민:**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좋은 사건이 적시에 있어야 한다. 아마 다른 로스쿨도 마찬가지로 상황이겠지만, 리걸클리닉 운영 초기에는 양질의 사건, 살아있는 실제 사건을 수업에 연계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법률구조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진행하시는 좋은 공익소송 사건을 가져와서 수업에서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실습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리걸클리닉이 본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때문에 법률상담 참여를 많이 해야 하는 리걸클리닉 교과목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다.

**Q. 향후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 방향은?**

**권태상:** 이화여대 리걸클리닉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리걸클리닉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리걸클리닉 과목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젠더법 특성화와 관련하여 젠더법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서 여성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 학생들이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리걸클리닉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권태상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간사



한민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 리걸클리닉을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고 있어요!



(왼쪽부터) 김수민 학생(임상법학회 4기 회장), 권태상 교수(임상법학교육센터 간사), 한민 교수(임상법학교육센터장), 유지혜 학생(임상법학회 5기 회장)

**Q.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김수민:** 리걸클리닉 활동은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로스쿨 입학 당시의 포부와는 달리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보니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는데, 리걸클리닉은 내가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유지혜:** 변호사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점인 것 같다. 의뢰인 분들 중에는 전문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만족을 얻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또한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에 더하여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Q. 진정한 봉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수민:** 진정한 봉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베푸는 것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 법률 상담의 경우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에 가까울 것이다.

**유지혜:** 진정한 봉사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법률지식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법적 조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것으로 진정한 봉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

**Q. 임상법학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들었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운영이 되나?**

**김수민:** 임상법학회는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사건당 2명 정도씩 참여한다. 성적관리도 해야 하고, 변호사시험도 준비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회회원도 기수별로 50명이 넘는다. 우리가 한 기수에 100명 정도 되니, 절반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것이다.

**유지혜:** 맞다.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 가입 신청을 받는데, 시기를 놓쳐서 가입하지 못했던 학우들의 문기가 빗발친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접하게 되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다.

**Q. 기억에 남는 법률상담 사례가 있나?**

**김수민:** 법률상담의 경우 민사 사건이 주였는데, 아내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집어 들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된 형사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의뢰인들은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얻는 부분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

**유지혜:** 아무래도 첫 참관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학교에서는 교과서로만 배우오던 것을 살아있는 사안에 조금이나마 적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님께서 내담자의 질문을 듣고 인터넷 지도를 찾아, 분쟁이 된 토지의 지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상담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예비시험 제도 도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손영현**



66 과거 독방에서 혼자 공부해야 합격한다는 ‘전설’이 지금도 대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99

## 들어가며

작년 1월 박영선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다.

예비시험은 우리처럼 대륙법계이면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예비시험 제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었다. 그 당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아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게 된 이유가 예비시험의 도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도입된 지 6년을 즈음하여 다시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현행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와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의 예비시험 제도는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 평가해보겠다. 그리고 로스쿨과 같이 법조계 진입경로를 더 두려는 것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도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예비시험’이다. 즉,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과 같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도 빨리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예비시험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2~3년이 걸리는 로스쿨보다는 예비시험을 치려는 사람이 많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도 빨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예비시험을 치러 한다고 한다. 이렇게 변호사시험 통과에만 집중됨으로서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는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예비시험 통과자와 로스쿨 졸업자들이 같이 변호사시험을 칠 때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 법조계의 혁신을 기원하며 도입한 로스쿨제도는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과거체제로 유지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예비시험 제도의 문제점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우리나라 예비시험 제도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공부한 뒤에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에

서 예비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함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매진하게 되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예비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변호사시험을 치기까지 3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느냐는 문제가 있다. 예비시험이 도입될 경우 응시인원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사법시험 2차 과목들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법학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 3년간 추가로 법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본 예비시험 제도에서 보인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일본처럼 로스쿨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법조계 진입장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로스쿨이 가진 제도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때, 로스쿨이 법조계 진입에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노철래의원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라고 하고 있다. 로스쿨이 다른 대학원에 비해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금만으로 진입장벽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법고시가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업으로 사법고시공부를 해야 한다. 즉,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사법고시 학원을 다니고 방을 얻어 공부하면서 경제활동 없이 기약 없는 몇 년을 공부하는 것과 로스쿨 3년을 비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 독방에서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전설’이 지금도 대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전설’로 다수에게 ‘사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제도로 보완되고 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다른 전문대학원들과 장학금관련 사항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보증 학자금용자제도를 통해서도 그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 실제 나의 경우도 정부보증 학자금용자를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다.

물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등록금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노철래의원 발의안 제안이유에서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라고 적시하면서 로스쿨의 입학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시가 그러하듯 로스쿨 입시도 기량이 출중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다보니 근소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 그렇다보니 떨어진 사람에게 속 시원한 이유를 보여주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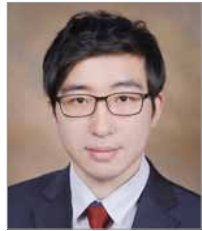
사법고시는 몇 점 이하는 다 탈락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보여주다 보니 그와 비교하여 로스쿨 입시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법조인을 국가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던 것을 대학이라는 사인이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보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인에게 위탁됨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 국가가 법조인 선발권을 독점하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법조인 선발에 대해서만 보았을 때 법조인 선발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로스쿨들이 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제도의 존속과 폐지를 통해 논할 부분이 아니라 관계 부처들의 입학전형 감사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앞으로 로스쿨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로스쿨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나가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득을 본 사람 중 한명이 나라고 생각한다. 화학과를 졸업하고 군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생으로만 살아온 내게 법조인의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군 전역 후 30대 초반의 나이에 기약 없는 사법고시에 뛰어 들 결심을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물론 30대 초반에 결심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한다. 하지만 존경을 받을 만큼 어려운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길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일까? 나는 늦게라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도 나처럼 뒤늦은 꿈을 실현시켜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로스쿨이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창**



# 내가 작곡하고도 돈은 다른 사람이? 제2의 조용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오반석

66 **신중하고 주의 깊게  
창작자를 보호하고 장려할 때, 현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저작권 및 문화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99

밥 딜런(Bob Dylan)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포크 가수이자 시인, 화가로서 1970년대 대한민국 통기타 음악에 영향을 준 미국 포크 음악 사상 가장 중요한 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그의 작품은 1960년대부터 비공식 작자와 저항음악의 대표로서 사랑을 받았다. 한국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준<sup>1)</sup> "Blowin' in the Wind", "The Times They Are a-Changin"과 같은 노래들은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저항적 노랫말로 시민권을 대표하는 곡이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저항의 표상이 되었다. 전설의 행보는 과거형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미 1982년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음악계의 전설인 밥 딜런은 2009년 67세의 나이로 그의 33번째 스튜디오 앨범 〈Together Through Life〉를 발매했고, 이는 빌보드 차트와 가장 많이 팔린 200개의 앨범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당시 최연장 빌보드 차트 1위 가수로 기록되었다.<sup>2)</sup> 끊임없는 창작에 대한 열정이 그를 21세기에도 '통하는' 가수로 이끈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밥 딜런 같은 가수가 있다면, 2013년의 가수 조용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는 1967년에 데뷔한 가수 조용필의 45주년이었다. 1980년대 '오빠부대'를 형성하며 한국 대

중가요사에 큰 획을 그은 가수 조용필. 그 동안 다양한 음악실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한국 대중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러기에 가수의 왕(歌王)이라고 불리는 가수 조용필. 그도 음반시대의 거장을 넘어 21세기 음원시대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보였다. 2013년 63세의 조용필이 내놓은 신곡 '바운스'가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정규 음반 〈Hello〉 발매 후에도 그 열풍은 대단해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후 선보인 '젼틀맨'을 누를 정도였다. 4월 말부터 5월 첫 주까지 음악 관련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의 것이었다. 가수가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음반판매량은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10만 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거둔 것은 노장가수 영역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가수 조용필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이면에, 25년 전의 저작권 분쟁 사연이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1986년 가수 조용필이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31곡(曲)의 저작권을 계약을 통해 소속 지구레코드사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어, 직접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분쟁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용필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구레코드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지구레코드 측은 조용필이 자신에게 양도한 31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용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용필과 지구레코드 임 사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계약상 논점은 그 양도계약이 조용필 또는 그 대리인 매니저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민법 제104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지(민법 제103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이러한 주장은 조용필 측이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은 조용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의사, 행위능력이 있는 이들이며 따라서 그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구레코드 임 사장에게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조용필의 패소로 끝났다.<sup>3)</sup>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조용필 측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패소하게 되고,<sup>4)</sup> 소송은 또 다시 조용필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만 대법원 역시 조용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내용대로 확정하였다.<sup>5)</sup> 결국 31곡의 직접적인 창작자인 조용필이 소속사인 지구레코드에 포괄적으로 저작권의 배포·복제권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 판결이 2013년 세간에 알려지면서, '가왕' 조용필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 결국 돌아온 조용필의 저작권, 그러나 법적 해결 마련 없이는 제2의 조용필 생길 것 표준계약서 뿐만 아니라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적극 보호 나서야...

다행히도 조용필 사건은 지구레코드 임 사장의 상속인의 선의에 의하여 전 31곡이 본 저작권자인 가수 조용필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해결이 법적으로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도 수많은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상 지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상당부분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최

고라고 손꼽히는 거장조차도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름 없는' 작곡가·예술가들의 권리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을지는 예상 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작성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폭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공박·경솔·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때 현재 판례 입장처럼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라고 볼 경우, 대부분의 계약은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것은 특수한 것으로서 보통의 계약과 달리 상당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 없이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및 판단능력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계약에 대한 경험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영세한 저작권자들의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창조는 연금술처럼 어느 순간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주의 깊게 창작자를 보호하고 장려할 때, 현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저작권 및 문화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a, 1872~1945)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중대한 즐거움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에 있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적자치의 원칙은 중대한 가치로서 민법의 핵심원리이기는 하지만, 그에 매몰되어 창작자 및 저작권자를 보호하는데 소홀할 경우, 창작의 동력은 갈피를 잃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창**

1) 김성환, 〈교실밖의 세계사〉, 사계절  
2) <http://www.billboard.com/artist/293235/bob-dylan/biography>  
3)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1998. 10. 16. 선고 97가합178 판결  
4) 서울고등법원 1999. 11. 30. 선고 98나61038 판결  
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 저작권양도사실확인등



12월 5일, 제주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17일에 진행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 공청회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개최한 두 번째 토론회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15년 1월 제4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관련 토론회

##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1 주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공법

#### 발표

##### ① 선택형

1) 선택형은 기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출제되어야 할 법리와 측정해야 할 이해정도를 설정해 두고 그것에 따라 출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일이다. 지엽적이거나 일부 범위에 쏠려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암기 위주의 문제도 지양돼야 한다.

2) 선택형 지문이 장문인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한정된 시간에 문제 자체를 읽는 데 급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택형의 질문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기반지식의 이해가 충실한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② 사례형

1) 쟁점을 적절히 조절하여 가능한 한 기본법리의 적용, 그 이전에 쟁점의 추출 등이 한정된 시간 안에 차분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쟁점으로 정선되어 문제가 출제될 필요가 있다.

2) 기존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그대로 출제할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또는 중요판례 그 자체의 사건개요와는 다른 사례를 만들어 그 판례를 적용해보게 하는 문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③기타

1) 내용의 수준, 난이도 문제: 변호사시험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변호사자격 검증시험의 핵심이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지엽적이라는 것과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2) 반복 출제의 문제: 반복출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험의 시행연수가 3회에 불과한 한국의 상황에서 반복 출제된다는 의미가 동일한 문제를 다시 출제한다는 것이어서는 아닐 것이고 특정법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는 의미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3) 판례 복사적인 문제의 지양: 판례를 그대로 옮겨놓는 문제가 로스쿨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지 않지만 출제의 편의성, 이의제기의 방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 지양돼야 한다.

4) 피드백: 시험 이후 채점 후 수험생들 성적을 두고 검토하고 문제의 적실성 등을 점검하며 이를 보고서로 발표하여 각 학교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피드백 하는 검토위원회가 매우 필수적이다.

#### 토론(1)

① 공법과목의 배점: 4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법과목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는 헌법실체법과 헌법재판법, 행정실체법과 행정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분야를 공·사법으로 크게 구분할 때 공법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② 공법과목의 편제의 적절성: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시험과목으로는 한데 묶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학생들에게 많은 헌법적 문제들 중에서도 행정 관련 문제 외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③ 선택형은 필요한가? 선택형은 암기를 강요하는 시험 유형이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형 지문으로서 암기 위주 교육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④ 논술형1(사례형): 무엇보다도 사례형은 논술형의 하위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적어도 헌법의 경우에는 사례화 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헌법적 소양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부인들이 학생들의 관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⑤ 논술형2(기록형): 사례형과 기록형은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기록형은 기록을 기반으로 사례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에 따라 기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⑥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지나치게 방만하게 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능력검정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략한 유형의 시험을 출제하되 깊이 있는 문제의 질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2)

① 반드시 변호사시험출제클리닉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출제교수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한다. 발제자의 '문제개발연구위원회' 구성 제안에 동의한다.

②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용어사용, 개념구성, 기본학설명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기획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

③ 공법 특히 행정법 교과서에 대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

④ 행정소송 중심의 사례형 문제로 굳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가배상, 손실보상의 주요 논점이 배제되는 경향에 있으며, 행정법각론의 주요 논점의 사례형 문제출제도 필요하다.

⑤ 기록형 문제에서 기록 분량을 너무 많이 제시하지 말고 쟁점이 부각될 수 있게 하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법에서 학설은 일반법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방향설정 기능

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로스쿨 기본교육에서는 특히 다수의견, 소수 반대의견, 보충의견의 대립이 있는 중요 판례에 관한 사례적 접근이 보다 더 요구된다.

⑥ 기본논점의 문제를 출제해도 채점을 엄격히 하면 충분히 변별력이 있고, 학원폐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성문법령의 법조문 독해능력 문제의 개발과 출제가 필요하다.

## 2 주제 :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민사법

### 발표

① 변호사시험의 출제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시험제도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즉 시험은 교육현장의 반영이자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을 주도해야 한다.

②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출제 전 단계: 선택형에 한하여 본다면, 사전출제를 통해 구축한 문제 POOL이 매우 빈약해 실제로 '건질 것'이 없는 형편이다. 일정수의 상임 출제위원을 미리 선정해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택형 문제들을 만들어 다듬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출제단계: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관해 본다면, 우선 각 과목별로 중진의 co-ordinator를 둘 필요가 있다. 또 사례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점추출형보다 쟁점제시형이 주로 출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쟁점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채점단계: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관하여 본다면 채점의 객관화가 담보돼야 한다. 물론 채점기준표가 주어지지만, 출제팀 별로 그 기준의 세분화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주 가끔씩은 채점기준표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경우도 있다.

4) 시험 후 단계: 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각 영역별로 변호사시험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가칭 "변호사시험 백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③ 출제의 범위 및 방식: 로스쿨의 교육현장에서나 변호사시험의 출제에서나 판례가 중요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이 있다. 우선 로스쿨의 교육현장에서 판례교육이 전부일 수는 없다.

④ 시험의 방식에 관한 제언

1) 시험의 분리: 로스쿨 재학생들이 미리 필수과목의 선택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절대평가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필수과목의 사례형 및 기록형 그리고 선택과목의 시험은 지금처럼 로스쿨 졸업 후에 치르고 상대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시험성적의 공개: 자격시험으로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로스쿨들의 서열화를 피하기 위해 성적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로서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지원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①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응시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존치하는 한, 법학교육은 수험법학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② 현실에 시험 응시자의 부담이 본래 예상한 범위를 넘어 더욱 가중된다. 이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시험의 압박으로 계속 쫓기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이다.

③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비교하면-그 시험응시자에게 몹시 잔인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합격 여부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는 당해연도에 합격하지 못하면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낙인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④ 민사법 선택형시험의 경우, 문제오류로 인한 소송 등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대법원판례에 경도된 경직된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이미 사법시험에서부터 개선사항을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민사법 사례형시험의 경우 민법과 민사절차법의 결합 또는 융합이 쉽지 않고, 결합할 경우에도 그 균형이 확보가 다시 문제된다. 이로 인해 사례형시험의 통일성과 일관성의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외국의 변호사시험제도를 본받아 민법과 민사절차(소송)법의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실태와 같이 얽힌 법학교육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관리의 독립, 수시시험제도의 도입, 시험성적의 공개와 변호사시험 과목의 축소 또는 분산이 바람직하다.

### 토론(2)

① 교과과정을 전반 3학기 후반 3학기로 구분하여, 전반 3학기는 법률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에, 후반 3학기는 전문화와 특성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전반 3학기

1)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으로 배치: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 3학기 수업으로 변호사시험 준비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후반 3학기에는 변호사시험에서 벗어나 전문화 및 특성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통필수과목 지정 및 집중 이수제 도입: 전반 3학기의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을 로스쿨 상호간에 통일하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며, 가능한 분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엄정한 학사관리와 학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수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3학기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중 선택성 시험 실시: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중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여 전반 3학기를 정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후반 3학기

1) 전문화와 특성화에 치중: 로스쿨 후반 3학기는 변호사시험과 관계없이 법조인으로서 전문화와 특성화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2) 완화된 학사관리: 후반 3학기의 경우 모두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절대



###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반 3학기과 달리 학점이 학생의 능력에 대한 보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최환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토론(3)**

〈현실의 문제점과 질의〉

①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1회	제2회	제3회
응시자	1,665명	2,046명	2,292명
합격자	1,451명	1,538명	1,550명
합격률	87.15%	75.17%	67.62%
초시합격률	87.15%	80.8%	76.81%
합격점(만점1,660점)	720.46점	762.03점	739.70점

② 사법연수원 1년차의 실무능력을 시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약 42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

③ 법적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시험인지(민사법 논술형의 경우): 과연 현재 민사법의 시험에서 특히 논술형의 경우, 이런 법적 추론능력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배점은 동일, 변호사시험의 시험시간과 답안분량은 사법시험의 절반임에도 문제의 분량이 더 많다.

- 1개의 문제당 답안 작성분량이 한 페이지의 3/5쪽 정도여서 서론과 결론을 쓰면 거의 채워지고 결론에 이르게 된 법적 추론과정을 적기가 거의 어렵다.

- 16개의 문제 중 10점짜리 소문제가 6개나 되는데 10점의 배점이면 답안분량은 한 페이지의 2/5쪽 정도여서 결론만을 적게 되고 법적 추론과정을 자세히 적을 수가 없게 된다.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3 주제 :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형사법**

**발표**

① 그동안 3차례의 변호사시험은 모두 1월에 실시하여 4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일부의 학생과 교수들은 시험의 실시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특히 3학년 2학기 교육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1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4월의 합격자 발표시기와 관련하여 합숙 채점방식을 도입하여 채점위원들이 집중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하면 1개월의 기간은 합격자 발표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③ 현재는 변호사시험이 입학정원의 75%의 합격을 보장하는 선발시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격시험에 상응하게 그 성격을 회복하여 로스쿨의 법학교육이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변호사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④ 선택형 시험은 숙독시험이나 인내력시험이 아니다. 설문과 지문의 양을 줄여야 하며, 부수적인 형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과목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형 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결합, 형사특별법 등 사실상 형사법의 모든 내용이 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제 범위는 너무 과도하므로, 형사특별법은 선택형의 시험범위에서 배제함이 적절하다.

⑤ 사례형 시험의 경우 작성해야 할 쟁점을 현재보다 반이나 2/3 정도로 줄여서 출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례형의 시험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다만 시험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시험문제의 유형에 대한 시간적 순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⑥ 사례형 시험의 출제범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형사특별법을 출제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실제 사건에서 직접 그리고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형사특별법들은 실무지향적 차원에서 시험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토론(1)**

① 발표자가 잘 지적하셨듯, 지금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숙독시험이나 인내력시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변호사시험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모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시험이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시험방식이 그 취지를 충족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문제가 단순 판례암기식 문제일 경우, 그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② 현행 선택형시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안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선택형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만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선택형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그리 적절한 방식이 아닐 것이다.

2) 현재와 같은 수험과목의 선택형문제는 폐지하되, 기초과목이나 선택과목에 한정하여 선택형 문제를 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식 판례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토론자는 지금 당장 제도의 큰

**이경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단순 암기식 판례문제를 지양하고, 사실관계의 분석에 주력하여 판례의 의미를 도출하고 이론이나 다른 판례와의 차이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 ① 변호사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시기의 문제: 현실적인 방안은 채점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변호사시험 종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본격적 채점이 시작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채점위원들이 채점에 집중할 수 있는 방학기간 종료시점, 즉 2월말까지 채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채점기준을 세밀화·정량화하는 것을 전제로 채점위원의 수를 늘려 소수 채점위원의 부담을 줄이고 채점기간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 ② 변호사시험방법의 분리 가능성: 3학년 1학기 여름 방학 마지막 기간에 선택형 시험을 치른다면, 3학년 1학기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덜어 주고 공부 방법이 체계화되도록 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변호사시험의 수준-자격시험의 수준에 상응하게: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화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여 로스쿨의 법학교육이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④ 선택형 시험의 문제와 해결방안: 선택형의 목적은 형사법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 ⑤ 사례형 시험의 문제와 해결방안: 형법의 경우 너무 많은 쟁점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통한 사례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의 쟁점은 1/2 또는 2/3로 줄여야 할 것이다.
- ⑥ 변호사시험 시험장소 확대 필요: 하루에 각각 공법, 형사법, 민사법 영역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시험 장소는 시험 당일의 condition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3년간 노력해온 성과를 불과 1주일 만에 평가 받는 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주제 :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 선택과목**

**발표**

- ① 학생들은 주로 기본과목과 학점 취득이 용이한 절대평가 과목에 수강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 세 번의 번시를 치렀을 뿐인데, 법전원에서의 특성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법률과목의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번시 선택과목의 응시와 법전원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전원의 전문법률과목과 연계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②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 ③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증명)제 도입: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시험부담을 줄이고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논술시험은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 법률분야는 각 로스쿨의 특성화를 강화함으로써 충실한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전문법률 분야의 유형화: '학교별'로 사회통념상 확립된 전문법률분야를 기준으로 학점이수제 단위가 되는 전문법률 분야를 유형화하여 과목풀을 만든다.
  - 2) 전문법률 분야 이수 학점 설정: 각 법전원에서 전문법률 분야의 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 일정 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 3) 전문법률 분야 학점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이와 같이 해당 전문법률 분야의 일정 과목(예를들어 4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B또는 C+)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법률 분야 학점 이수증명을 성적표에 기재하게 한다.
  - 4) 현행 특성화 분야의 재검토 및 확대: 개별 법전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예를들어 5년)로 특성화 분야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토론(1)**

- ① 변호사시험에 있어서의 합격률과 특성화·전문화를 표방하여 시행하는 선택과목시험은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설계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② 전문법률과목을 선택시험과목으로 치르도록 하는 제도는 일본에서 가져왔다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 취지를 "선택과목의 전문분야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조를 양성함에 이바지하는 점에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특성화 과목을 개설하고도 실제로는 변호사시험과목으로 변칙 운영하는 현실인 점에서 이는 실패한 제도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③ 지금까지 세 차례의 변호사시험실시를 통해 경험한 바, 선택과목 가운데 선호도 및 난이도

**장재욱**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이도 많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는 별개로 2-3일 학습으로 시험 준비를 끝내는 과목도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이 밝히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를 살린 합격의 결정”이라는 틀에는 벗어나 있는 선택과목시험제도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

④ 현재 로스쿨 안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SJD와 연계하여 특성화 내지 전문화 교육과정을 일부 함께 운영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전문적 법률과목시험에 갈음해서 전문법률분야 일정학점 이상 이수를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 토론(2)

①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새로운 제도는 그 규모와 정도만 약간 다를 뿐 과거의 ‘시험을 통한 선발 제도’로 되돌아가고 있거나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이 된 미국의 변호사시험에서도 우리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열거한 과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③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장래 진출분야에 대한 고려보다는 어떤 과목이 시험 준비에 학습 부담이 적은가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다.

#### ④ 해결방안

1) 변호사시험성격의 원위치- 자격시험화: 의사고시와 같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합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 사정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응시 인원의 75-80%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선택과목의 폐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된다면 학교에서의 교육에 중점으로 두어 공부하지 않거나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에 대한 유급제도가 진지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기본과목들의 시험과목도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법률과목으로서 선택과목의 활성화: 수강과목의 결정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폐강에 따른 교수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은 1명이라는 수강생이 있는 경우 폐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창**

\* 위의 원고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문·토론문에서 주요 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전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편의상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의 줄임말)’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 통계로 보는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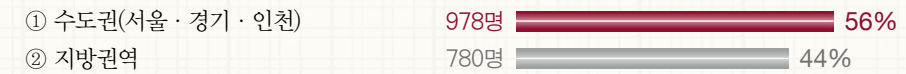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된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회의 시험이 실시된 오늘,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학생설문 통계



### PART I. 일반사항

#### I-1. 귀하께서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는?



#### I-2. 귀하께서 현재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십니까?



#### I-3. 귀하께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연도는 언제입니까?



### PART II. 변호사시험 제도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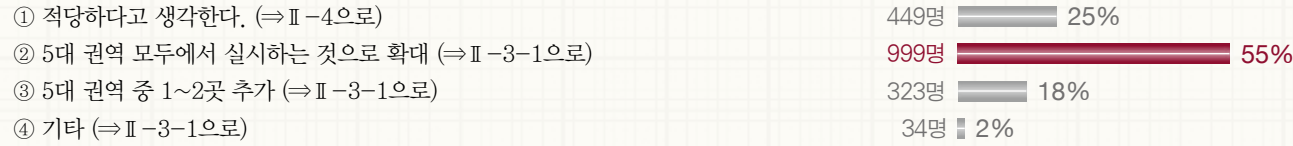
#### II-1. 현행 변호사시험 시기(3학년 기준, 차년도 1월초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I-2.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기(4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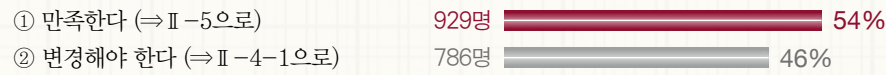
II-3.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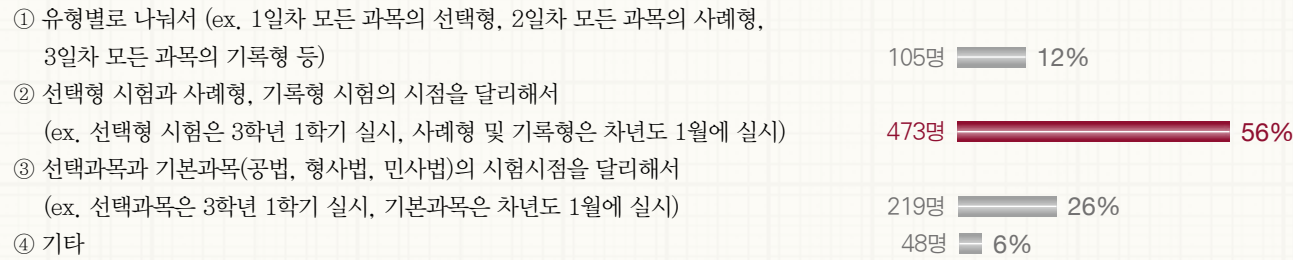
II-3-1. 시험장소가 추가되어야 할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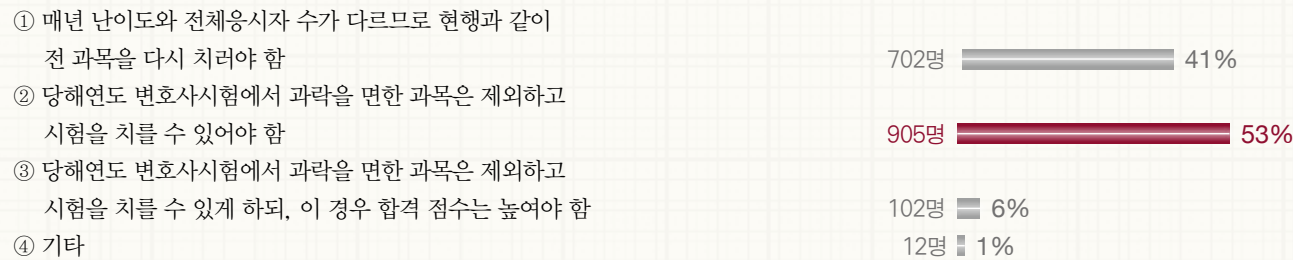
II-4. 현재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동안 각 영역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실시)



II-4-1.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5.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차년도에 치르는 시험은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6.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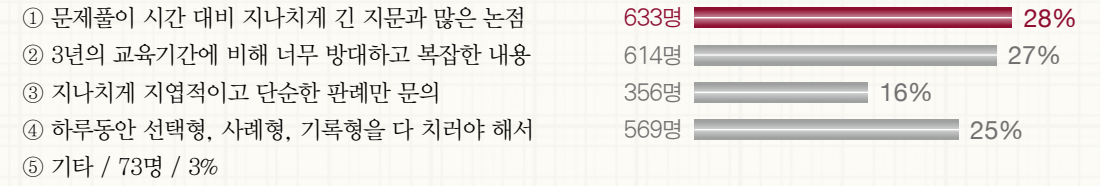


II-7. 법조윤리시험(現 법무부)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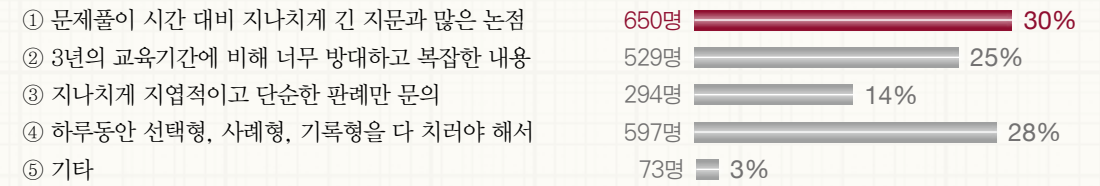


PART III. 변호사시험 기본과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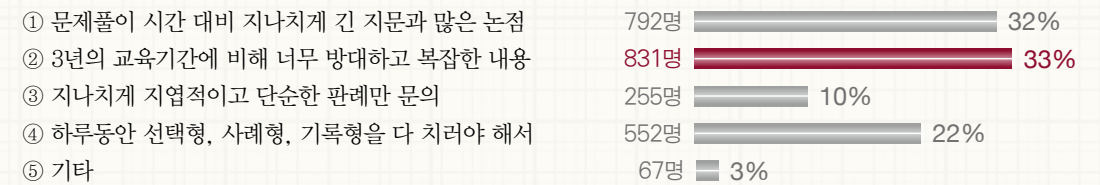
III-1. 변호사시험의 공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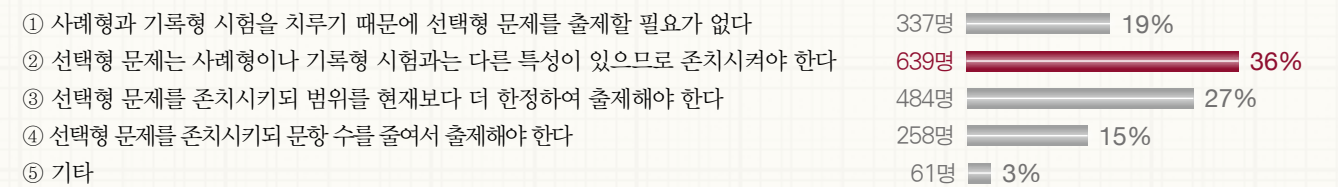
III-2. 변호사시험의 형사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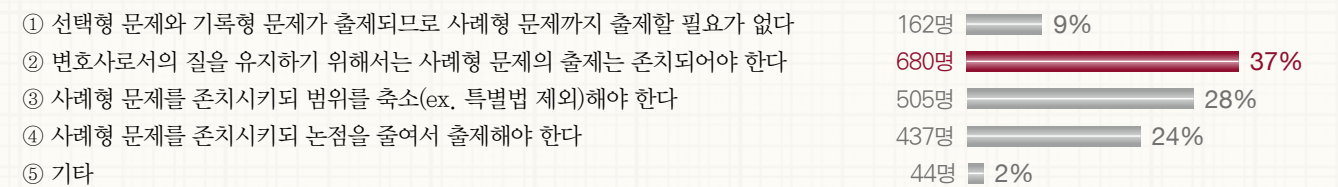
III-3. 변호사시험의 민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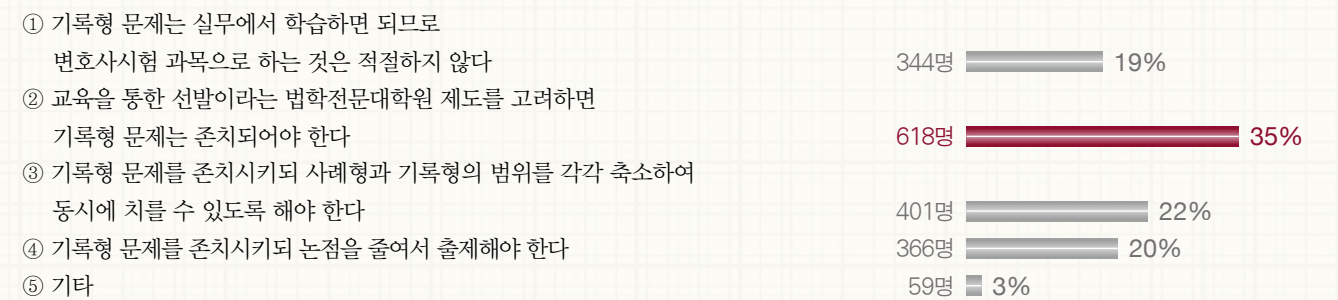
III-4. 선택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III-5. 사례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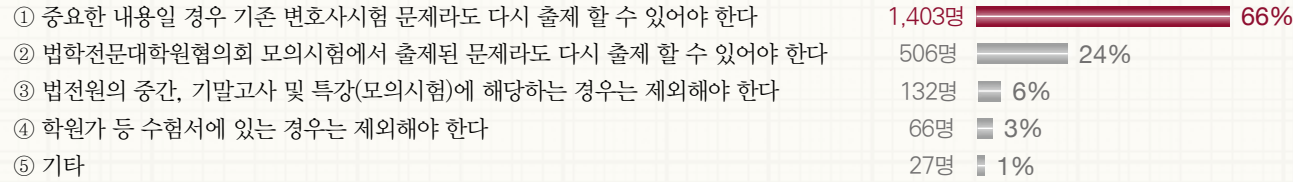


III-6. 기록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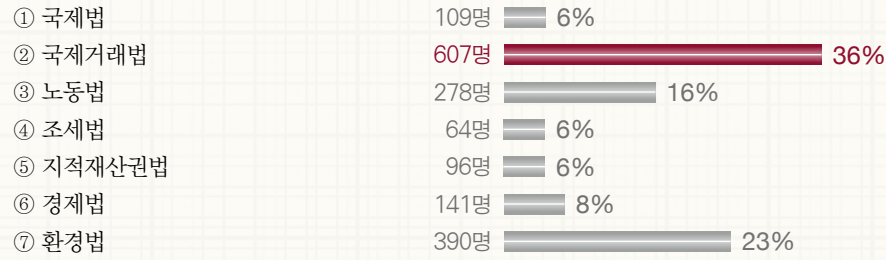


### III-7. 변호사시험 출제 시 출제에서 제외시키는 기출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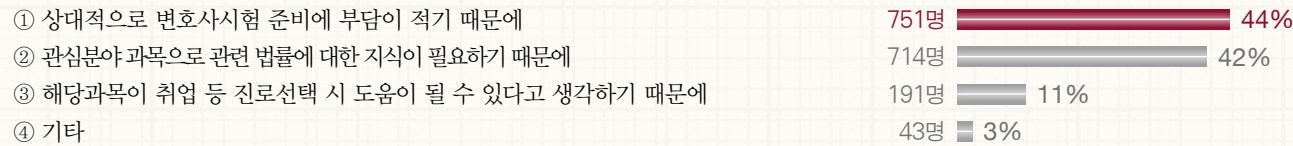


### PART IV.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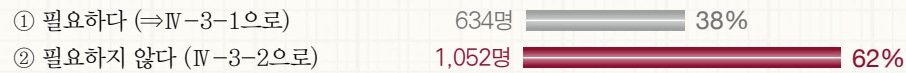
#### IV-1. 귀하께서는 추후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에 응시할 생각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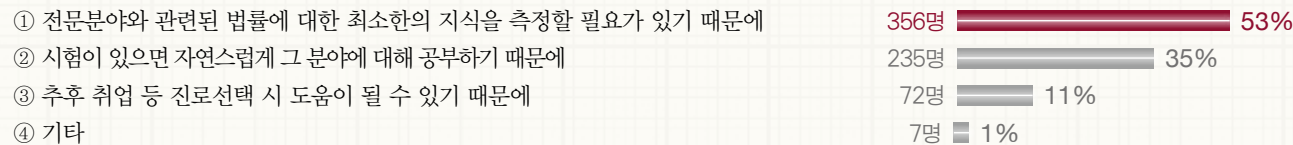
#### IV-2. 위의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IV-3.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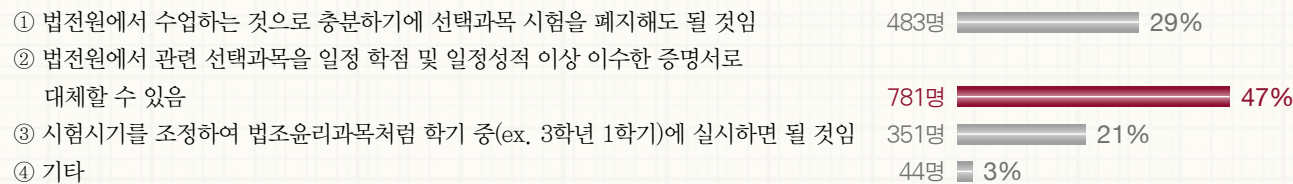
##### IV-3-1.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IV-4으로)



##### IV-3-2.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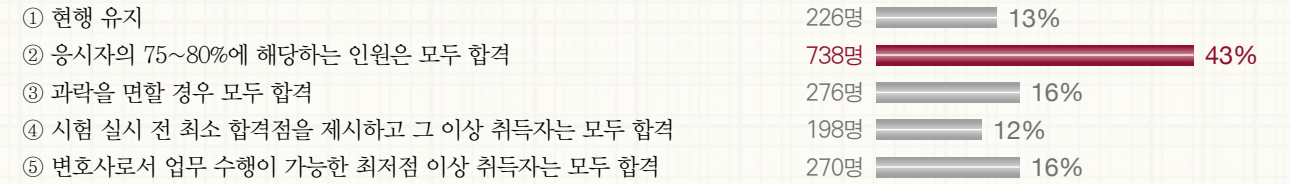


#### IV-4.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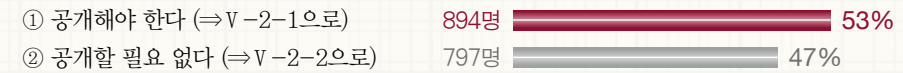


### PART V.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관련

#### V-1.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V-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V-2-1.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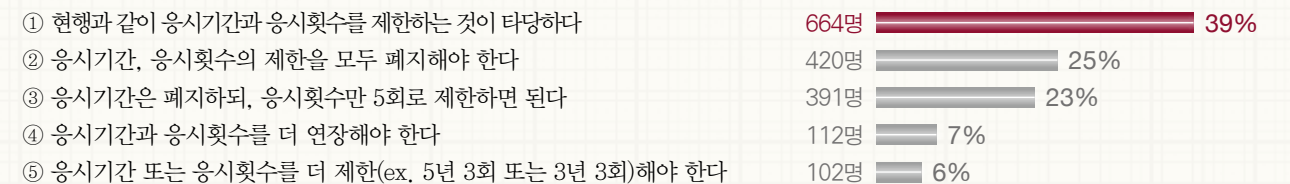
##### V-2-2.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V-3. 변호사시험의 적절한 합격인원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V-4. 현재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 II . 변호사시험 제도 관련 사항**

**II-1. 현행 변호사시험 시기(3학년 기준, 차년도 1월초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2.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기(4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3.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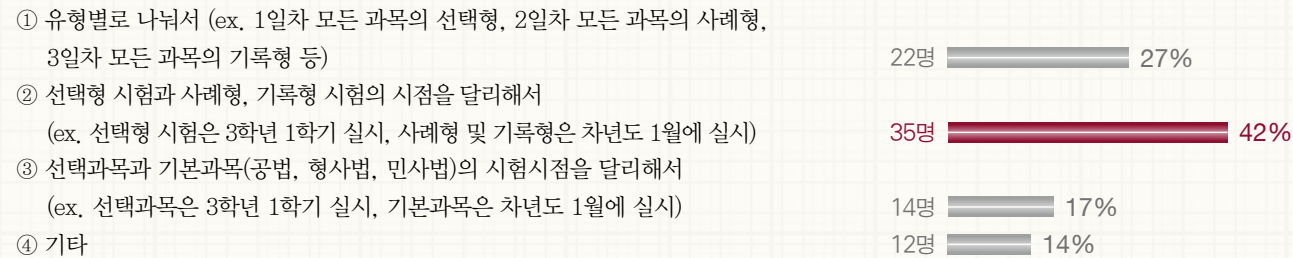
**II-3-1. 시험장소가 추가되어야 할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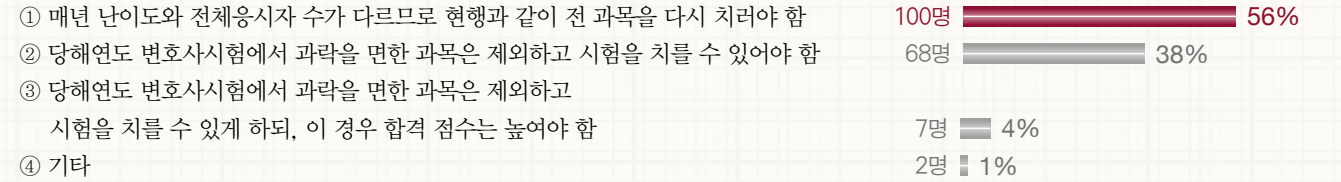
**II-4. 현재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동안 각 영역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실시)**



**II-4-1.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5. 만약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차년도에 치르는 시험은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I-6.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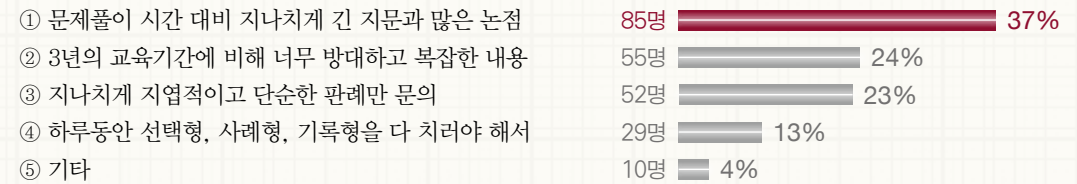


**II-7. 법조윤리시험(現 법무부)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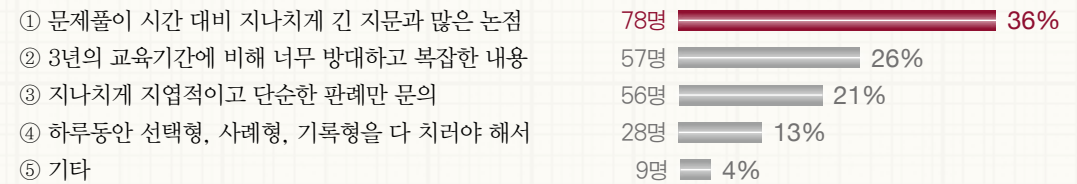


**PART III . 변호사시험 기본과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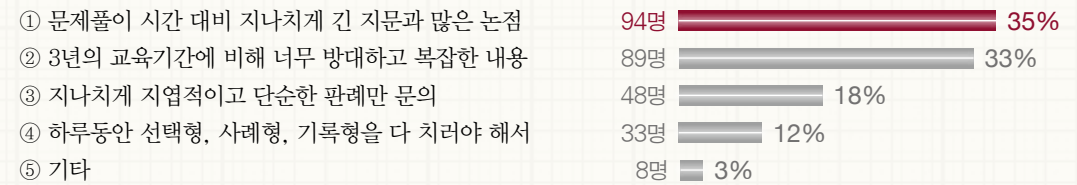
**III-1. 변호사시험의 공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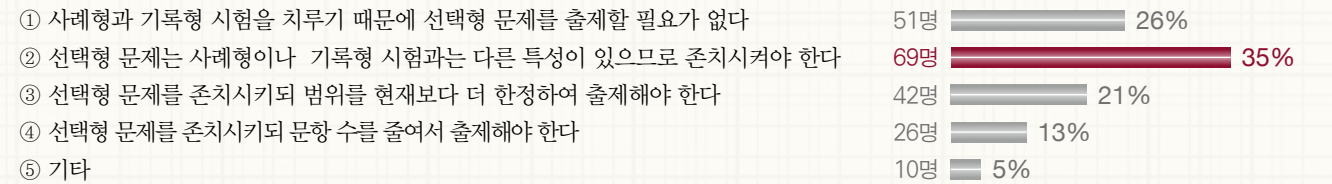
**III-2. 변호사시험의 형사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III-3. 변호사시험의 민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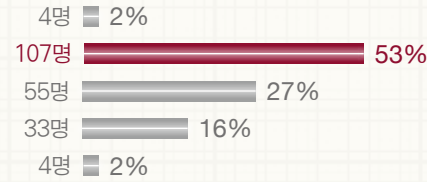
**III-4. 선택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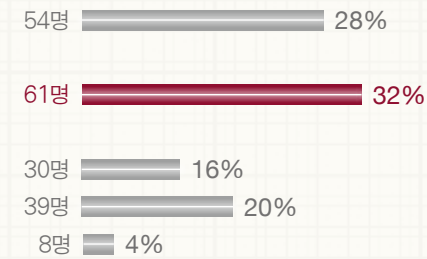
### Ⅲ-5. 사례형 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선택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출제되므로 사례형 문제까지 출제할 필요가 없다
- ② 변호사로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례형 문제의 출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 ③ 사례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범위를 축소(ex. 특별법 제외)해야 한다
- ④ 사례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논점을 줄여서 출제해야 한다
- ⑤ 기타



### Ⅲ-6. 기록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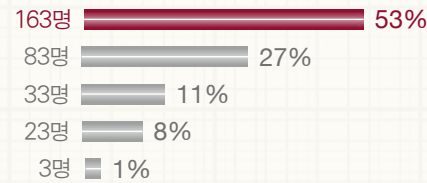
- ① 기록형 문제는 실무에서 학습하면 되므로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교육을 통한 선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고려하면 기록형 문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 ③ 기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사례형과 기록형의 범위를 각각 축소하여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기록형 문제를 존치시키되 논점을 줄여서 출제해야 한다
- ⑤ 기타



### Ⅲ-7. 변호사시험 출제 시 출제에서 제외시키는 기출문제의 범위에

####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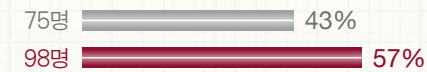
- ① 중요한 내용일 경우 기존 변호사시험 문제라도 다시 출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라도 다시 출제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법전원의 중간, 기말고사 및 특강(모의시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 ④ 학원가 등 수험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 ⑤ 기타



## PARTⅣ.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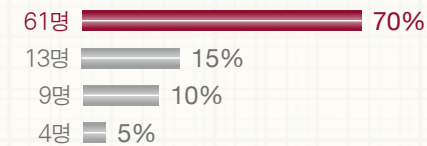
### Ⅳ-3.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Ⅳ-3-1으로)
- ② 필요하지 않다 (Ⅳ-3-2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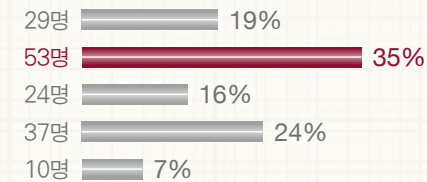
#### Ⅳ-3-1.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Ⅳ-4으로)

- ① 전문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② 시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에
- ③ 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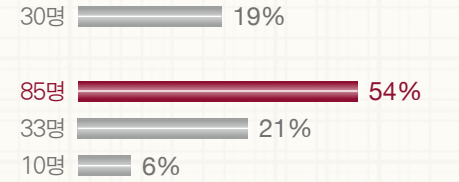
#### Ⅳ-3-2.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①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 ② 법전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 ③ 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 ④ 관심분야에 대한 과목들을 더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기타



### Ⅳ-4.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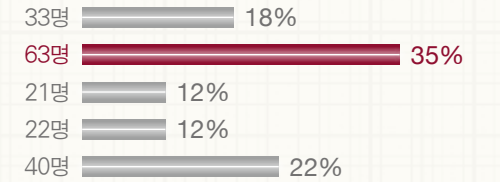
- ① 법전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해도 될 것임
- ② 법전원에서 관련 선택과목을 일정 학점 및 일정성적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시험시기를 조정하여 법조윤리과목처럼 학기 중(ex. 3학년 1학기)에 실시하면 될 것임
- ④ 기타



## PART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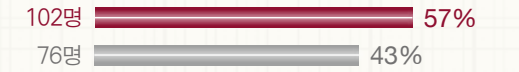
### V-1.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지
- ② 응시자의 75~80%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합격
- ③ 과락을 면할 경우 모두 합격
- ④ 시험 실시 전 최소 합격점을 제시하고 그 이상 취득자는 모두 합격
- ⑤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최저점 이상 취득자는 모두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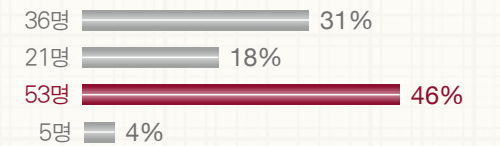
### V-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개해야 한다 (⇒V-2-1으로)
- ② 공개할 필요 없다 (⇒V-2-2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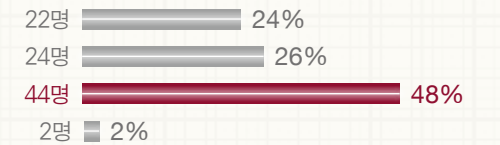
#### V-2-1.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① 취업 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성적이 비공개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 ③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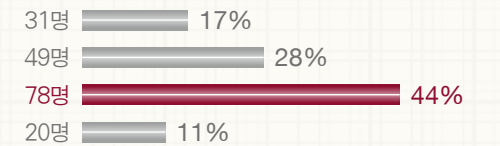
#### V-2-2. 변호사시험 성적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① 법전원 수업의 정상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법전원 간 서열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③ 자격시험의 특성 상 성적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기타



### V-3. 변호사시험의 적절한 합격인원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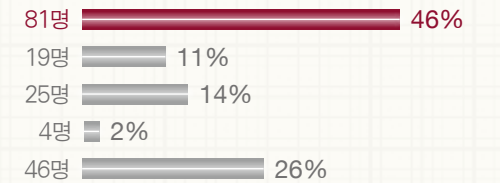
- ① 현행수준(입학정원의 75%, 1,500여명)
- ② 입학정원의 80% 수준(1,600여명)
- ③ 응시인원의 75~80% 수준
- ④ 기타



### V-4. 현재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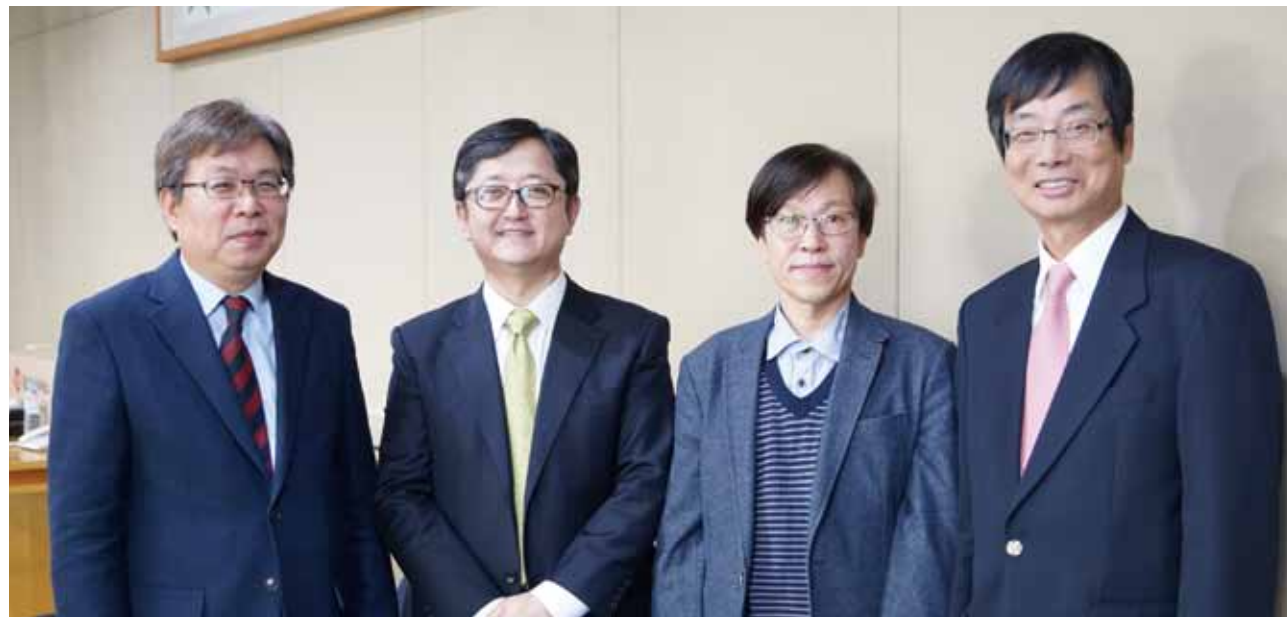
####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응시기간, 응시횟수의 제한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③ 응시기간은 폐지하되, 응시횟수만 5회로 제한하면 된다
- ④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더 연장해야 한다
- ⑤ 응시기간 또는 응시횟수를 더 제한(ex. 5년 3회 또는 3년 3회)해야 한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여야... 수요 · 공급은 시장이 결정”

## ‘현대판 음서제’ 논란은 오해... 특정과목 쏠림, 낮은 합격률 탓 사회적 배려자에 정부 지원을...합격 후 6개월 의무연수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11월 5일 한경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지연(연세대), 오수근(이화여대), 이상복(서강대), 신영호(고려대) 로스쿨 원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 기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입소문으로 오해와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2회에 걸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회 진출 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연재했다. 이번 3회에서는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원장)과 전지연 연세대, 오수근 이화여대,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함께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로스쿨의 발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투명한 학생 선발로 음서제 불가능”

원장들은 우선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입학 기준과 비싼 등록금 등으로 부의 대물림 수단이 돼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까지 덮여 온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전 원장은 “연세대는 입학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을 3인 1조로 진행하고 면접위원은 당일 아침에야 담당 학생이 누군지 통보받는다”며 “학교 입장에서도 실력 없는 학생을 뽑는 것은 추후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입학생의 질 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게 좌담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이 원장은 “현재는 일부 하위그룹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외국어, 전공 과목 등에서 탁월한 잠재력이 있다”며 “이들이 특정 분야에 진출해 수년간 법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나면 나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영국에는 특정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하면 소정의 시험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로스쿨을 거쳐 이 같은 방식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성화 더딘 것은 변시 탓”

로스쿨별 특성화 취지는 무더진 반면 시험 과목 위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처럼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해법은 합격률 제고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이어지는 한 특성화는 어렵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전국 로스쿨이 일부 과목의 상대평가 방식을 조정해 올해부터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 정원 대비 기준이 아닌 응시자 기준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신 이사장은 “현행은 입학 정원 대비 75%로 고정해두고 있어서 불합격자가 적체되면 나중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며 “응시자 대비 75%로 해야 형평성이나 합격 예상 가능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변호사의 공급과 수요 문제는 시장에서 저절로 조율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교육적이지 않고 오

히려 법률 지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인재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 재정 지원 촉구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송무(소송)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로펌에 가야 취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법조계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시각이 제한되지만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가면 시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도 “외국어 능력과 법률 지식을 갖고 기업의 해외 지사 등에 나가서 활약하며 시야를 넓히고 있는 졸업생이 많다”며 “기업 내에서도 법무팀보다는 기획팀이나 실무 부서에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자기 계발과 향후 승진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재정 지원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 원장은 “일본에서는 국립·사립 관계없이 문부성에서 학교 실적에 따라 상당 부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대부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생활비나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학비 이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의무연수에 대해 노동착취 가능성과 실무 교육 한계 등을 이유로 폐지 혹은 축소 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창](#)

한국경제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영국 법조인, 어떻게 양성되는가?

영국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중세시대에 온 착각이 들 때가 있다. 바로 변호사와 판사가 쓰고 있는 가발과, 그들의 법복 때문이다. 영국의 변호사와 판사들이 가발을 쓰게 된 것은 중세시대(약 17세기 경)부터로, 다소 거추장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영국 법정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국은 강한 전통성 속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그 어떤 나라보다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로 법조인을 탄생시키고 있다.

제공\_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



## 1 영국 법조인 양성 체계

영국은 법과대학에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법조인 양성 체계를 갖고 있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일반변호사(Solicitor)와 변론변호사(Barrister)로 구분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는 변호사제도는 다른 입법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영국 고유의 변호사제도로 19세기 후반에 정착됐다.

### 일반변호사(Solicitor)



일반변호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그에 대한 법적 조언과 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객은 주로 개인, 기업, 공공기관, 기타 조직들이다. 일반변호사는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관리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맡는다.

- 계약서 작성, 법률사건 상담수행 (토지, 건물 매각을 위한 서류작성, 법률자문)
- 소송 진행 시 소송서류 작성 등 법정변호사의 보조업무 수행
- 하급법원에서의 변론

### 변론변호사(Barrister)



변론변호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법정에서만 고객을 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변론 중심의 영국의 재판제도 하에서 법정에서의 변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다.

- 위촉자의 소송서류 작성
- 법정에서 직접 변론
- 사무변호사를 통해 사건 인수(직접 사건 인수 불가, 의뢰인 직접 접촉 불가)

※ 영국의 영주권 없이는 변론변호사가 되기 어렵다.

※ 변론변호사는 상급법원의 변론권과 판사임용권을 최근까지 독점했으며, 이들은 '상류계층의 영예로운 직업 보유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 끊임없이 법정변호사와 일반변호사간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으며, 근래에는 양 직역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제기됐고, 영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일반변호사의 변론 기능 강화, 고위 판사직 임용을 시작했다. 또한 법정변호사들도 사무변호사의 로펌이나 정부기관에 고용되고, 사건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시작했다.

## 2 일반변호사 vs. 변론변호사

### 여기서 잠깐!

일반변호사/변론변호사가 되려면 Step2 단계 이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하지만, 이 자격시험은 Step2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별로 자율·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일반변호사 (Solicitor)



**Step1** 정규법학사학위(QLD: Qualifying Law Degree) 또는 법률 디플로마(GDL: Graduate Diploma in Law)

- (1) 정규법학사학위(QLD: Qualifying Law Degree)
  -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법학사과정으로 SRA 및 BSB가 정해 놓은 조건을 충족한 법학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다.
  - QLD 과정은 full-time 과정인 경우 3년 또는 4년이다.
  - 법학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면 법학사 학위(Bachelor of Laws, LL.B)를 받고, QLD는 석사학위라고 이해하면 쉽다.

- (2) 법률 디플로마(GDL: Graduate Diploma in Law)
  - GDL 과정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GDL 과정의 운영기관은 대학의 부설기관인 것이 보통이지만, GDL 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Step2** 법률실무교육과정(LPC: Legal Practice Course)

- LPC 과정은 실무수습(Step3)에 들어가기 전 일 년에 걸쳐 진행되는 코스로 법률 실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운영주체는 대학부설기관이 보통이다.
- LPC 과정은 학부 법학전공자(LL.B) 또는 GDL 과정 수료자만 신청 가능하다.
- 교과과정은 기본과목(윤리, 기술, 조세, 유럽, 유언검인 및 유산의 집행), 필수 영역(기업법과 연습, 양도, 소송과 변론), 선택영역(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이해에 관한 과목들을 포괄), 확대영역(회계학, 전문적 행동과 고객배려, 유럽연합법, 세법), 기술영역(실용적 법률조사, 작문과 기안, 의뢰인 면담과 상담, 변론)으로 구성된다.

**Step3** 실무수습(Training Contract)

-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일반변호사 사무실에서 2년간 수습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변호사 사무실과 수습일반변호사계약(Trainee Contracts)을 체결해야 한다.
- 2년간의 연수기간을 마치면 일반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자격 취득 후 3년간은 사무실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여기서 잠깐!

일반변호사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변론변호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도 Step2 이후 평가를 받는다.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선다형 필기시험, 실제 작성한 문서 평가, 변론이나 협상의 실연 과정을 비디오풀로 촬영하여 평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보통 80~90%가 통과하여 법정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정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Step3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변론변호사 (Barrister)



**Step1** 정규법학사학위(qualifying law degree) 또는 법률 디플로마(GDL: Graduate Diploma in Law)

- (1) 정규법학사학위(QLD: Qualifying Law Degree)
  -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법학사과정으로 SRA 및 BSB가 정해 놓은 조건을 충족한 법학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다.
  - QLD 과정은 full-time 과정인 경우 3년 또는 4년이다.

- (2) 법률 디플로마(GDL: Graduate Diploma in Law)
  - GDL 과정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GDL 과정의 운영기관은 대학의 부설기관인 것이 보통이지만, GDL 과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Step2** 실무교육과정(BPTC: Bar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 이 과정에서는 변론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전문지식보다는 변론(advocacy) 등에 관한 전문기술의 교육에 중점을 둔다.
- 필수과목(민사소송 및 구제법, 형사소송 및 판결선고, 증거법, 법조윤리), 선택과목, 사례연구 기술, 문서작성 기술, 자문을 위한 의견서 작성, 상담 기술을 교육한다.
- 전업(full-time) 과정의 경우 1년 과정으로, 교육의 특성상 12명 이하의 소그룹 단위로 교육을 진행한다.

**Step3** 법정변호사 수습기간(Pupillage)

- 법정변호사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습기간으로, 매년 300개의 수습 자리에 4,000명이 지원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 1년 과정으로, 6개월씩 두 번의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기간(First six)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정 변호사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업무를 익힌다. 이 기간에는 자기의 명의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단지 소송서류의 작성이나 변론준비 등을 돕는 일을 한다. 두 번째 기간(Second six)에는 자기의 명의로 간단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으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는 없다.
- 실무연수를 마치면 완전한 변론변호사가 되지만 독립하여 사무실을 열 수는 없고 3년간은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론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에 소속되어야 한다.



### 3 랭킹, 등록금,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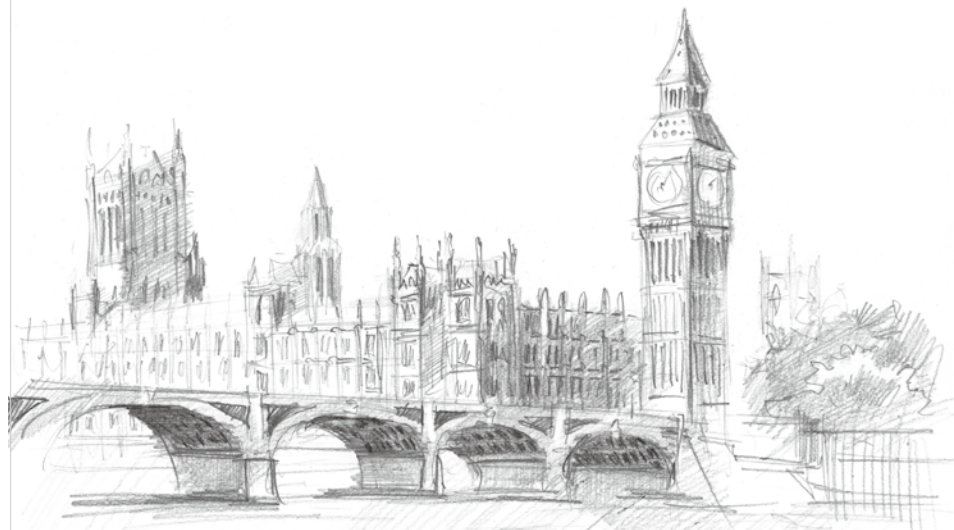
#### 랭킹

미국에 이어 영국은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법학을 가르치는 학교(법과대학 또는 로스쿨)가 많기로 유명하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50위 로스쿨 중 영국은 6개, 200대 글로벌 로스쿨 중 26개가 랭크됐다. 그만큼 영국의 법학교육은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탄탄한 교육과정을 자랑한다. "The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 4가지 척도(입학 수준 / 입학 후의 만족도 / 시설 / 졸업 후의 전망)로 분석한 결과 영국 로스쿨의 랭킹은 아래와 같다.

(※랭킹은 조사하는 기관/매체에 따라 매년 달라지니, 참고할 것)

랭킹	학교명	입학 수준	학생 만족도	시설 리서치	졸업 후 전망	전체 스코어
1	Cambridge	584	-	2.80	85	100.0
2	Oxford	583	4.23	3.00	83	96.9
3	London School of Economics	553	4.20	3.10	81	95.8
4	Durham	559	4.23	2.90	78	94.9
5	University College London	558	4.04	3.05	80	94.9
6	Glasgow	535	4.02	2.60	88	94.4
7	Nottingham	491	4.29	2.90	82	94.3
8	King's College London	552	3.97	2.55	85	93.8
9	Queen Mary	497	4.16	2.70	78	92.4
10	Edinburgh	519	3.78	2.75	93	92.4

<COMPLETE UNIVERSITY GUIDE'S 2015 LEAGUE TABLES>



### 4 판사, 검사

#### 등록금

영국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위를 받는 기관, 코스, 장소, 기부금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특히 영국이나 EU의 학생이 아닌, 타국가의 학생일 경우 등록금은 1.5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비싸진다.

	영국 학생 / 유럽연합 학생	유학생
수업료(Tuition fee)	£ 14,755(한화 약 2,000만원)	£ 19,480(한화 약 2,700만원)
부대시설 이용비 (College fee)	£ 2,659(한화 약 370만원)	
생활비(Living cost)	£ 12,900(한화 약 1,800만원)	
합 계	£ 30,314(한화 약 4,200만원)	£ 35,039(한화 약 4,800만원)

판사는 일반변호사와 법정변호사로 재직 한 변호사 중 적어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중 대법원장의 조언에 따라 여왕이 임명한다.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형사 판사와 민사 판사의 영역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다. 형사 판사(Criminal Judge)는 주로 형사 법원에서 관장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주재하는 역할이다. 형사 법원에서는 보통 피고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이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피고에게 선고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판사(Civil Judge)는 일반인, 법인 등 상호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 판결을 내린다. 과거에는 두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나, 최근의 판사들은 두 영역 모두 주재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 구분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검사의 선발방식은 법률실습과정을 마친 일반변호사나 변론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지원을 받아 수시로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일정한 경력을 쌓은 뒤 검사로 지원하거나 왕립검찰청 자체 훈련프로그램을 마치고 검사로 지원,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

#### 참고문헌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유럽 변호사 시험제도 운영연구 : 영국, 이태리". 2008.
- 김제완. "영국의 변호사 : barrister와 solicitor".
- The Bar Council [www.barcouncil.org.uk](http://www.barcouncil.org.uk)
-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www.sra.org.uk](http://www.sra.org.uk)

# 공익변호사로서의 8개월을 돌아보며

— 공감 김수영 변호사



변호사시험 후 8개월,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수습기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수습을 마치고 공감 변호사로서 송무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후배님들께서 그다지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동안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마치며 나를 정리해보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첫 출근길 아침 공기의 설렘과 부담이 생생합니다. 미생의 장그레 마냥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던 제게 공감의 변호사님들은 한명씩 돌아가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사무실 주변을 각자 즐기는 코스대로 산책하며 여러 카페나 식당을 소개해주었다는 점이네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창덕궁 주변의 다양한 산책로를 맘껏 즐길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여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 후 삼일 째 되던 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남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제 뒷자리에 계시야 할 황필규 변호사님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팽목항에서 안산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온몸으로 세월호를 보듬어 안고서 법률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많이 감동하곤 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님은 학생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 피해자와 화물노동자들, 구조과정에서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학생들의 죽음 한편에 쓸쓸히 숨죽여있던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이 거대한 참사 앞에서 각자의 활동공간을 만들고 소통하며 일 해가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민변의 진상규명작업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갓 수습변호사임에도 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무실 구성원들의 배려와 응원덕분이었습니다.

공감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일하고 싶었던 영역은 기간제, 간접고용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장애인권 분야였습니다. 장애인권 영역을 맡고 계시던 엄형국 변호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을 시작으로 민사손배청구, 건물철거소송과 헌법소원을 거쳐 입법안 검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주셨습니다. 불안정노동 영역의 윤지영 변호사님 역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부터 상고심 준비서면까지 제가 쓴 문장 하나하나를 검토해주셨습니다. 실로 꼼꼼한 지도였고 가르침이었는데, 지금의 저를 보자니 제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다양한 송무 경험 중에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도 있고 아픈 패소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겼던 사건을 통해서는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밀한 법리구성과 논증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입증하여 판사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 정당한 판결에 함께 도달해가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쪼던 사건 중에는, 패소한지 한 달여 쫓 지났을 때 당사자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편지에 담긴 당사자의 안타까운 심정과 그럼에도 감사했다는 마음은 앞으로 소송에 임할 때 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사건을 유료로 수임하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무료로 공익사건을 전담하는 사무실의 특성상 패소가 예상되면서도 다들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하고 진행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당사자와의 관계가 좀 더 애뜻한 경우도 많은듯합니다. 승소든 패소든 배울 것이 많았던 8개월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 후배님들께서 송무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공감에서의 활동은 송무 보다는 각종 회의나 기자회견, 집회 참석,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간 꾸준히, 자주 뵈었던 분들은 서울 노원구의 활동가들과 아파트 경비원분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일상화된 정리해고와 정년 단축으로 한국사회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 직장에서 밀려난 아버지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자리는 경비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조건은 참으로 가혹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그리고 경비원이 갑, 을, 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간접고용 상황에서 경비원들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안고서 노동관계법 상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어느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건도 이 같은 간접고용의 굴레와 불안정한 일자리가 낳은 구조적인 참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노원구에서는 노동복지센터와 민주노총일만노조, 그리고 공감이 꾸준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모임을 만들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열심히 활동한 결과 현재 약 300여명의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모임을 가져가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에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노원구에서 선례를 잘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의 경비원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활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개인적으로 그 어떤 승소 못지않게 기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의미도 클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8개월을 지내온, 그리고 앞으로 활동해나갈 공감은 여러 공익변호사단체 중 하나입니다. 아마 다른 공익변호사단체들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

과 활동 속에서 배워가는 3기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로스쿨 생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다못해 재밌는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데 잡설만 길었습니다. 다만 후배님들께 공익변호사로서 지내온 짧은 시간을 보여드리고, 이게 무척이나 즐겁다는 것,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량 있는 후배님들께서 계획 중이신 다양한 전망들 중 하나로 공익변호사의 길도 고민해볼 수 있다면 부끄러운 글이나마 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의 남은 기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로스쿨 생활 알차게 마치시고 법조 현장에서 만나 얼굴 맞대고 못 다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



김수영 학부를 7년 동안 다니면서도 사회에만 관심을 뒀었다. 덕분에 크게 뺏겨나버린 학점과 미친한 법학적성에도 선배들의 각별한 진학지도에 힘입어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탁월한 동기들의 뒤를 부지런히 쫓다보니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영광도 얻게 되더라. 이 모든 건 그대들의 덕분이라 여기고 나도 한번은 주위에 도움이 되어보고자 전업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결심했다.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문제적 작품에 대한 변론

# Memento Mori, 멈춘 시간 그리고 부의 덧없음에 대하여

- 한스 홀바인, 대사들

그림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두 남자들이 서있습니다. 왼편의 남자는 위풍당당한 몸매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털옷을 입었습니다. 오른편 남자는 왜소한 편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걸친 옷이 역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왼편의 남자는 1533년 프랑스의 프랑소와 I세의 외교사절이었던 장 당트빌(Danteville)이고, 오른편의 남자는 프랑스 Lavaur지방의 주교였던 조르주 드 셀브(de Selve)입니다. 드 셀브도 후에 프랑스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사들” 이죠.

왼편의 당트빌은 오른손으로 단검을 들고 있는데 아주 작게 2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입니다. 오른편 드 셀브는 오른팔로 책을 걸치고 있는데, 책에는 25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25세,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주교와 대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안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그림은 왼쪽의 당트빌이 주문해 그려 이후에도 당트빌 가문에서 보관되었습니다. 당트빌은 당시 영국과 교황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영국으로 파견되어 있었으나 임무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예상보다 긴 시간을 영국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임무를 받은 드 셀브라는 주교를 만나 서로 통하는 점이 있어 친해지고 이렇게 기념초상화까지 그린 것이죠.

두 남자는 직업이 각각 대사와 주교인데 이는 세속적 권력과 교회권력을 상징합니다. 가운데가득 놓인 지구의 등 여러 학술 도구와 악기들은 종교와 정치 모두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푸른 천구의와 하얀 지구의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자세한 지도 내부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류트, 피리와 같은 악기와, 성가집과 같은 종교적 기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천구의, 지구의, 항해도구, 수학책 등 과학도구는 이성을 상징하고, 류트와 같은 악기와 책들은 문화적 소양을 나타내며, 화려한 옷과 커튼들은 부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이 신비로운 것은 두 남자가 대칭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지 들은 좀 닮았습니다. 당시에는 당트빌만 대사였지만 주교였던 드 셀브도 후에 대사가 됩니다. 종교와 세속이 닮은바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울 구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은 두 부유층의 우정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가운데 기울어진 이상한 그림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그러진 왜상 때문에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도상이 무엇인지는 옆에서 봐야 나타납니다. 바로 해골입니다. 왜 해골을 그렸고 또 왜 기울여서 그렸을까요? 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변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 정물화

이 작품의 수많은 기물들은 정물화의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서양의 정물화는 정지된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기원은 고대 로마나 폼페이 벽화 장식에서 출발합니다만 장식이 아닌 독립적 회화 장르가 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입니다. 당시 정물화는 고가의 귀중한 기물을 나열함으로써 부를 과시하는 컬렉션화,

“Vanitas vanitatum, dixit Ecclesiastes; vanitas vanitatum, et omnia vanitas.”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2절”





요리나 식기가 세팅된 테이블을 그린 만찬화, 어류나 새, 과일 식기가 있는 정경을 묘사한 테이블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재주의라고 합니다. 정물화는 영어로 still life라고 하고 네덜란드어로 ‘스틸레벤’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뜻의 스틸과 ‘눈앞에 두고 그린다’는 뜻의 레벤이 합쳐진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정물화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물질이 가지는 힘, 내가 가진 권력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필묵, 표주박, 파초잎, 불로초 등을 그리는 기명절지화, 화초도, 충화도 등에서 책가도라는 양식으로 완성되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정물그림이 유행했는데 이는 중산계급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높은 계층이 성서나 신화처럼 무거운 주제를 좋아했다면, 시민들은 가계가 윤택해지자 주로 거실이나 부엌에 부담 없이 걸 풍경화와 정물화를 많이 샀습니다. 서로 산 것을 교환하거나 매매하기도 했고 한집에 수 점씩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가구입니다. 17세기가 되면 차츰 구매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화가들도 제각기 전문분야를 가지게 됩니다. 정물화의 주요 주제들은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정물의 양식 중에는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라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지고 집집마다 진귀한 물건이 넘쳐나고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음”을 주제로 한 정물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일까요?

구약성서 ‘전도서’의 첫 구절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인은 일찍이 세상의 향락에 몸을 담갔으나 헛되었고, 포도주와 여인의 향기에 몸을 적셨으나 헛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짙은 허무주의의 정서가 느껴지는 이 구절이 죽음을 주제로 한 정물화인 ‘바니타스(vanitas)’ 정물화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미드 “왕좌의 게임”에서도 나와 유명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원래 개선 행진을 벌이던 고대 로마의 장군 뒤에서 노예들로 하여금 “죽음을 기억하라(memento mori)”고 외치게 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영광의 절정에 있을 때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도록 한 이 로마의 풍습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주제가 죽음인 것에 비해서 정물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립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릴수록 죽음이라는 주제가 반어적으로 돋보이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지요. 바니타스 정물화를 다른 정물화랑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물 중에 꼭 해골, 책, 골동품 같은 기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후기 르네상스 시기 인간의 죄 많음을 강조하고 삶의 덧없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상화 뒷면에 그렸던 해골에서 발전했습니다. 1550년경 독자적 분야가 되어 1620년에 인기를 얻었죠. 네덜란드는 부유한 상업도시이지만, 엄격한 칼뱅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그 이전인 14세기 중세는 인간은 원죄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길을 얻었으니 교회에 충실히 다니자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지

요. 그러나 16세기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죽음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세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교훈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전형적인 바니타스 정물의 고향이 되었던 것은 칼뱅주의의 요충지이자 대학 도시로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지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그 시대를 살펴 볼까요? 당시 있었던 30년 전쟁(1618~1648)이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로마 카톨릭과 연합해 반종교개혁을 주창하며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신교를 믿던 네덜란드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이기고, 오란녀 왕가를 중심으로 한 신교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한층 겸허한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는 동서고금, 어느 시공간에서나 발견됩니다. 부유한 상업도시이자 30년 전쟁에서 이긴 네덜란드. 그러나 칼뱅주의 엄격 신학파인 네덜란드인들은 과거 중세의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와 30년 전쟁의 고통을 이 부유하고 행복한 시기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나타내는 기물들과 해골을 그려 넣어 이러한 부도 어느 한 순간 없어질 수 있는 덧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자는 바니타스 정물이 나타난 것이죠. 지식인도 한계가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부유함과 시간 그리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덧없음을 나타내는 해골 등의 기물을 그려 삶의 지혜를 깨달으려 했던 것입니다.

#### 바니타스 정물들의 상징들

바니타스는 해골 등 몇 가지 전형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물들의 각기 뜻을 알아볼까요? 책 · 지도 · 악기, 악보, 조각상등은 예술과 학문을 나타냅니다. 특히 책은 배움과 지식의 한계를, 악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갖는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지갑과 보석, 비단천은 부와 권력을, 귀한 수입물건 예를 들면 일본갈과 화려한 조개껍질등도 당시 매우 희귀한 물건으로 부의 상징입니다 그 모두가 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이런 도기에 물이나 소중한 것을 넣어 나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술잔 · 담배 파이프 · 트럼프 카드는 세속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해골 · 시계 · 타고 있는 양초 · 비누 거품 · 꽃은 죽음과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불 꺼진 램프와 시계는 시간을 말합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생명의 유한함 또는 절제의 상징입니다. 옥수수 열매 · 담쟁이 · 월계수가지는 부활과 영생을 뜻하며, 거울은 인간의 허영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음을 뜻하는 해골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성경에서 골고다 언덕의 골고다는 해골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의 책형을 그릴 때 그래서 화가들은 십자가 밑에 해골을 그려 넣곤 했던



저자 소개  
**김별다비 /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첫 대학물관 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현재는 엘지전자 스마트비즈니스센터(컨텐츠/플랫폼 사업부) 디바이스 개인정보 task에서 근무하고 있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 히에로니무스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참회의 성인들을 그릴 때도 그들은 항상 해골을 함께 그렸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정물들은 한 기물이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지만 둘 이상의 기물이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세 때 세계는 읽을 수 있는 책처럼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신의 의지가 실현되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책은 인류의 경험과 지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간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한다는 의미인데요, 해골아래 책이 놓여 있다면, 죽음 앞에서는 지식과 지혜도 결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자와 거울이 같이 있으면, 여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운 젊음을 가꾸고 즐기지만, 곧 그 젊음은 사그라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울에 화려한 보석을 한 노파가 꺼져가는 촛불을 들고 어둠 속에 사라지고 있다면 이러한 젊음과 부귀영화는 한 자루의 촛불처럼 언젠가 사라짐을 의미하고, 거울 속의 해골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해골이 곧 너의 미래라는 뜻을 의미하지요. 여러 물건들이 넘어진 채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면, 그것들이 상징하는 속세의 업적이 결국에는 뒤집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의 기물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대사들이 팔을 올려놓고 있는 가구는 ‘골동품 선반(에타제레 étagère)’이라고 하는데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탁자의 상단부에는 천구의 등향해술과 천문학 도구가 놓여 있고, 하단부에는 지구의 등과 악기 등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의 지식과 종교 등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살펴봤죠. 나침반, 천구의와 해시계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리는 것처럼 이전의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로부터 우주를 해명하는 구조를 뒤흔든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영국 국교회의 분리를 시도한 헨리 왕의 이혼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지구위에 유럽 대륙은 특별히 밝게 채색되어 강조되고 있고, 그 아래에 아프리카가 보이며 아메리카는 불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정확한 지식이 결여되었던 까닭이라고 하네요. 반면 유럽 지도는 당트빌의 영지의 성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위를 보셨나요? 녹색 커튼 틈으로 살짝 은색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그리스도가 보이는지요? 이는 가톨릭과 신교와의 갈등, 신대륙 발견과 과학으로 무너지는 과거의 지식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수난의 정점인 이 예수상은 대사들이라는 이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이 지닌 지상의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해골이 암시하는 것처럼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의 탁자의 하단부의 악기와 오른쪽의 펼쳐진 책을 보죠. 이 악기는 류트이고, 펼쳐진 책은 찬송가책입니다. 이는 신교와 구교간의 갈등을 나타내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그려진 블러디 메리 아시죠? 영국왕 헨리가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블린과 결혼하는데 이를 교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헨리 왕은 기어이 이혼하고 앤과 결혼하였으며 교황은 헨리왕을 파문했습니다. 그림의 악기의 줄을 자세히 보면 끊어져 있는데, 조화의 상징인 류트의 줄이 끊어진 것은 신교와 구교의 불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놓인 찬송가책은 신교와 구교가 다시 화해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물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운데 기울어진 해골을 살펴보죠. 이 이상한 도상은 그림을 두고 오른쪽으로 서면 제대로 해골로 보입니다. 이것을 “왜상 화법(歪像 · anamorphosis)”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아나 ana’는 ‘다시 again’ 모르프 morphe는 ‘형상 shape’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상이 오늘의 그림 “대사들”을 유명하게 해 준 장본인이죠. 그렇다면 왜 이 그림은 해골을 바로 그려 넣지 않고, 왜상을 통해서 그려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이 걸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처음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계단의 벽면에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림을 올려다보게 되면 제대로 된 해골을 볼 수 있죠. 왜상화법은 시각예술에서, 일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림에 나타난 대상의 모습이 뒤틀려 보이지만 특별한 각도에서 보거나 곡면 거울에 비추어 보면 왜곡이 사라지고 그림 속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그리는 원근법을 말합니다.


왜상 그림에서 관람자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를 이상한 얼룩으로 보지만 시각과 관점을 바꾸면 원래 의도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정상적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그 자체로는 일종의 의미 없는 추상화에 지나지 않지만 거울 혹은 다른 위치에 서서 알 수 있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다른 차원의 타자적 세계에서 이 의미를 다시 본다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왜상화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림을 본 관람객은 처음에는 두 인물에 주목하면서 그 화려함과 품위 있는 자태에 매료되지만 이상한 얼룩을 봅니다. 그런데 옆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림을 돌아보는 순간, 바로 그때 해골을 알아차립니다.

권력, 지식, 예술을 담은 광경은 자취를 감추고 모든 것의 종말을 암시하는 죽음의 기호가 관람객을 바라보게 만드는 연극적인 요소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부와 명예와 이성을 갖춘 당당한 두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 반대로 그것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바니타스 정물을 그려넣음으로써 죽음에 승리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마치 로마시대 개선장군의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노예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다시 봐봐!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텅없음이 있다니까.” 라고 말이죠.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을 알려 드리죠. 원편의 당트빌은 모자에 작은 해골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트빌의 좌우명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을 그림에 표현한 것이죠. 미술사에서는 이러한 바니타스 정물화를 한창 잘나갈 때 죽음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의미만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와서 죽음을 수동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바니타스 정물화’는 인본주의적 르네상스 예술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수 많은 현대 미술이 죽음을 주제로 하는 것은 바로 현재라는 순간을 사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념인 것입니다. **창**

**참고**  
그림출처 <http://www.wga.hu/>  
두산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다음 백과사전  
변종필의 아트 토크 - 인생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다. 바니타스'에 담긴 삶의 철학  
최정은 / 미술 칼럼니스트, 서양미술의 걸작, 대사들  
셀린 들라보, 착각을 부르는 미술관, 시그마북스  
이주현 미술평론가, 알고싶은 미술, 세상의 부귀영화 헛되고 헛되도다  
유경희, 미술평론가, 아트살롱, 책과 해골 헛되니 어쩌랴  
유경희, CEO를 위한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욕망이 거세당한 젊은 세대를 위해  
노성두/ 미술사가 · 서울대 미학과 강사, [노성두의 그림읽기] ① 피터 클라스존 '바니타스 정물 이건수 월간미술 편집장' 텅없음이 주는 매력  
[http://noirepices.tistory.com/m/post/174#footnote\\_174\\_1](http://noirepices.tistory.com/m/post/174#footnote_174_1)  
<http://blog.naver.com/godwhynot/20140252168>  
유즈 토크 <http://www.musetalktalk.com>  
<http://poiesis.tistory.com/m/post/516>  
<http://m.blog.naver.com/hwg20000/220036756642>  
<http://blog.daum.net/simjy/11984865>



**툰아보기**  공소시효를 다룬 한국 영화

이번 호에서 퉠아볼 주제는 바로 공소시효를 다룬 영화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제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제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사실을 없애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학사전]**

'툰아보기'는 '살살이 퉠아가면서 살퍼바다'라는 순 우리말로, 퉠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 공소시효를 다룬 한국 영화



## 살인의 추억(Memories Of Murder)

1986년에서 1989년까지 3년 동안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 젊은 여인들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범인을 잡기 위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영화 개봉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했지만, 과학수사가 발달하고 범죄기록이 잘 보존됨에 따라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은 지나치게 짧은 논란이 불거졌다.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개정됐다. 송강호, 김상경, 변희봉 등 실력 있는 연기파 배우들과 씬스틸러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가 불만하다. 네티즌 평점 9.33으로 한국 스릴러 영화의 바이블로 꼽힌다.

**관전포인트** 범죄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해야 함은 초등학교도 아는 사실이지만, 범인의 족적을 무참히 문개는 경운기의 등장에 깊은 백침과 분노를 주의할 것. (개봉:2003.04.25 / 감독: 봉준호 / 러닝타임: 132분)

## 아이들...(Children)

영화 <아이들...>은 1991년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영화화했다. 기초의원선거로 임시 공휴일이었던 아침 8시경, 도롱뇽 알을 주우러 집을 나선 다섯 명의 초등학교생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만 약 50만 명에 달했지만, 잘못된 제보와 소문으로 초기 수사에 실패했고,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11년이 흘렀다. 그러던 중 2002년,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 5구가 발견됐고, 감정 결과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로 판명됐으며, 타살로 결론 났다. <아이들...>은 특종을 쫓는 다큐멘터리 PD의 시선으로 2006년 공소시효 만료까지의 사건 진행상황을 충실히 쫓는 동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애틋한 심정을 그려냈다. 가상의 범인을 쫓는 여정 또한 추가돼 실화와 극화의 조화를 꾀했다는 평.

**관전포인트** '어느 부모가 자식목소리를 모르겠어요'라는 종호 엄마의 대사가 심금을 울린다. 범인을 잡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가 적절하게 믹스된 작품. (개봉:2011.02.17 / 감독: 이규만 / 러닝타임: 132분)



## 그놈 목소리(Voice Of A Murder)

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소년실종사건과 함께 3대 영구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 1991년 집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남자 아이가 실종됐고, 유괴사건 발생 44일 후 1.5km 떨어진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유괴 직후 아이를 살해했지만, 아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협박과 돈을 요구했다. 유괴범의 유일한 단서는 협박전화 목소리. 교양 있는 말투, 그러나 감정이라곤 없는 듯 소름끼치게 냉정한 목소리 뿐. 실제로 범인을 잡기 위해 1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관전포인트** 설경구와 김남주의 오열 연기를 보다 보면, 어느새 같이 오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화 속 그놈의 목소리는 실제 범인의 목소리와 86% 이상 일치한다는 배우 강동원의 목소리. (개봉: 2007.02.01. / 감독: 박진표 / 러닝타임: 122분)



## 내가 살인범이다(Confession of Murder)

앞서 소개한 영화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내가 살인범이다>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일본 열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식인 살인마 사가와 잇세이. 유학 시절 네덜란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총으로 쏘서 죽이고, 그녀의 몸을 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범죄 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이유와 정신 이상을 이유로 풀려났다. 후에 일본으로 돌아와 '악의 고백'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누렸다. <내가 살인범이다>는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난다. 몇 년 후, 자신을 연쇄 살인범이라고 밝힌 범인이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다.

**관전포인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웰메이드 영화. (개봉: 2012.11.08 / 감독: 정병길 / 러닝타임: 119분)

## 도가니(Silenced)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광주의 모 장애인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 직설적이고 사실적이었던 원작에 비해 영화는 보다 순화시키고 돌려서 사실을 전달한다. 그럼에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일부 묘사들은 충분히 과감하고, 충격적이다. 소설과 영화가 실화임이 밝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 '도가니법' 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는 교사들의 모습에 분노게이지 상승. (개봉: 2011.09.22 / 감독: 황동혁 / 러닝타임: 125분)





2015년이 밝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룬 것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밝았으니,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다. 부푼 꿈과 설렘, 그리고 잘 짜여진 계획이면 충분히 한 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의 시작, 올해도 어김없이 좋은 공연과 전시로 감성을 충전해보자.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5-6전시실(3층)  
**전시기간** 2014.11.22(토)~2015.2.15(일)  
**관람료** 성인12,000원 대학생10,000원  
 초,중,고등학생 8,000원  
**홈페이지** <http://www.sac.or.kr>

## 유럽모던풍경화의 탄생 인상파의 고향, 노르망디

노르망디는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19세기 후반, 철도가 연결되면서 파리 시민의 휴식처가 된 노르망디는 프랑스 유수의 리조트 지역으로 발전했다. 파리에 거주하던 많은 화가들도 해변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지역인 노르망디를 찾았다. 파리의 화가들이 찾아오기 이전인 19세기 전반부터, 노르망디의 풍경 화가들은 이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야외에서 보이는 그대로 담은 작업을 해왔다. 자연스럽게 파리에서 온 화가들은 이 지역 화가들의 야외 풍경화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11월 22일(토)부터 2015년 2월 15일(일)까지 유럽모던풍경화의 탄생 <인상파의 고향, 노르망디 L'estuaire de la Seine - L'invention d'unpaysage>을 개최한다. 모네Claude Monet와 부댕Eugene Boudin 뿐만 아니라, 쿠르베Gustave Courbet, 코로Camille Corot, 터너J.M.W.Turner 그리고 라울 뒤파Raoul Dufy 등 모던아트의 거장들이 그린 노르망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 Exhibition

##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텔러

##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1886년 초판된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L.Stevenson)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Jekyll and Mr.Hyde)"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선(善)과 악(惡), 인간의 이중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서는 1997년 초연되었고, 이후 독일, 스웨덴, 일본,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10여 개국 이상에서 공연된 세계적인 뮤지컬이다. 한국에서는 2004년 초연되어, 3주가 조금 넘는 짧은 공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회 매진, 전회 기립 박수"라는,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기며, 한국 뮤지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되며, 뮤지컬 한류(韓流)의 시초가 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흥행 매출을 기록했다.



**공연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  
**공연기간** 2014.11.21(금)~2015.4.5(일)  
**관람료** VIP석\_14만원 / R석\_11만원  
 S석\_8만원 / A석\_6만원  
**공연문의** <http://www.odmusical.com/>

# Musical

##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 Photo



대림미술관은 오는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매카트니의 사진전(Linda McCartney Retrospective)을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오랜 시간 대중문화를 이끌어 온 잡지 'Rolling Stone(롤링 스톤)'의 커버에 사진을 장식한 최초의 여성 사진작가 린다 매카트니는 도어즈(The Doors)에서 비틀즈(The Beatles)에 이르기까지 음악계 최고의 아이콘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포착한 사진작가로 인정 받아왔다. 그녀는 사진작업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악작업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했고, 출판과 방송을 통해 채식주의와 동물 권리보호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으로 주목 받았다. 비틀즈의 멤버이자 남편이었던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그리고 그녀의 딸인 메리 매카트니(Mary McCartney)와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가 전시 기획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하는 이번 한국 전시 <린다 매카트니 사진전 -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에서 관람객들은 화려한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왔던 린다의 진심 어린 기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공연장소** 대림미술관  
**공연일시** 2014.11.6(목)~2015.4.26(일)  
**관람료**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홈페이지** <https://www.daelimmuseum.org/>

# Perfomance

## 새로운 리타의 등장! 그녀가 온다! 리타 Educating Rita



**공연장소**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공연기간** 2014.12.3(수)~2015.2.1(일)  
**관람료** R석\_6만원 S석\_5만원 A석\_4만원  
**홈페이지** <http://www.dmf.co.kr/>

전 세계 관객이 사랑한 스테디셀러 연극 <리타 Educating Rita>가 다시 돌아왔다. 연극 <Educating Rita>는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의 극작가로도 잘 알려진 윌리 러셀(Willy Russell)의 작품으로 1980년 6월 런던의 웨어하우스 극장에서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해 초연됐다. 연극의 큰 인기에 힘입어 1984년 영화로도 제작되어 영국영화방송대상(BAFTA), 골든 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남자연기상,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많은 상을 휩쓸었다. 초연 이후 35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공연되며 현대 명작으로의 가치를 입증 받고 있는 연극 리타는 국내에서는 1991년 <리타 길들이기>라는 이름으로 처음 관객과 만났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핫이슈는 캐스팅이다. '믿고 보는 여배우'이자 '공불리'라는 애칭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는 배우 공효진과 총무로의 대표 여배우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강혜정이 '리타'역에 더할 캐스팅되었다. **창**



###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우리가 나누는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랑이여!

11월 20일, 충남 유성구청 앞 갑천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시민단체가 복지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2014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 것.

지역 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담가 나눠주는 이번 행사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직원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장 나누기 행사 전,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법률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제공: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기업법무 전문가 될래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상 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2014년 제1회를 맞은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기업의 시각에서 공정거래법과 회사법을 검토하는 변론대회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전국 11개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참가해 그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팀(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충남대)이 각축을 벌인 끝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출처: 법률신문

### 해양영토분쟁,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승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최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법 분야의 저변을 넓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13년부터 개최됐다. 11월 8일 개최된 제2회 대회에서는 논리적인 법리해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팀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다. 한편 개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수변론가상은 백송이(성균관대 법전원)씨에게 돌아갔다.



사진출처: 법률저널

### 로스쿨 학생들 한자리에 모여 지재권 역량 겨뤄!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열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지재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12월 22일(월)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25개 로스쿨 중 총 20개교에서 56개팀, 16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장상을 거머쥐었다.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인하대,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한양대, 장려상은 서울시립대, 충남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사진제공: 특허청

# LAWSCHOOL NEWS



### 법무연수원 간담회

11월 19일(수) 법무연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는 법실무교육 발전과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법무연수원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연수원 이득홍 원장, 법전원협의회 신영호 이사장 및 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교육지원, 신임검사 교육현황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29차 이사회



12월 4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제29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신영호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 감사들은 그동안의 업무사항을 토대로 2015년도 사업계획 심의와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제31차 총회



제29차 이사회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제31차 총회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모여, 2014년도 업무사항 보고 및 2015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신현윤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 홍복기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월 28일(금)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법관, 검찰총장 등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이다.

###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개최



12월 5일(금) 제주 오션스위츠 가멜리아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축사로는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변호사시험의 각 영역(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창](#)



